



2009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Device of Lifelong Educatio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 혜 숙 · 박 은 철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Device of Lifelong Educatio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 연구진 ■

연구 책임 이 혜 숙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원 박 은 철 •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이 정 화 •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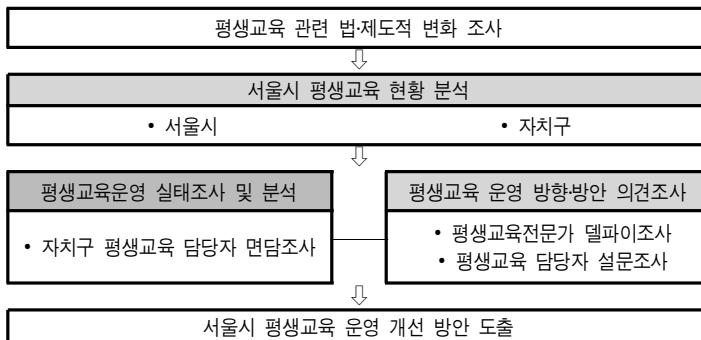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2007.12)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있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지면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이 요구됨.
-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그간 서울시가 직업훈련 등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해왔으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비하였으며, 현재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충분하지 않음.
- 이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체계



〈그림 1〉 연구의 체계

Ⅱ. 평생교육법 개정과 서울시의 역할

1.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

-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
 -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전담 추진 기구가 변경·조정되었으며,
 - － 중앙, 광역, 기초단위에 협의기구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항 강화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책임을 더욱 강조(평생교육법 제1조)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임무를 규정하고,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함(평생교육법 제5조).

2. 서울시의 역할

-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서울시의 역할
 -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
 -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
 - － 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등

Ⅲ.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분석

1.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 추진 체계
 - － 추진 전담조직은 서울시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 평생교육담당관의 3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 법·제도적 지원체제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9. 3)하고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2009. 3)하여 운영함.
- 평생교육 추진 사업
 - － 전담조직인 평생교육담당관은 9억 7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소의 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 간 협력사업, 시민제안 평생교육프로그램(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함.
 - －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문화국, 푸른도시국 등에 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2. 자치구 평생교육 현황

- 추진 조직
 - － 전담조직인 평생교육팀은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에서 구성되었으며, 평생교육사는 11개 구에서 총 15명을 배치함.
 - － 법·제도적 지원체제인 조례는 서초구, 동작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제정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는 18개 구에서 구성함.
-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 － 평생교육 예산과 시설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매우 큼.
 - － 프로그램은 교양·문화·여가교육 강좌가 대부분(66.4%)임.

IV.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1. 운영 실태 분석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
 - 많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강사섭외부터 프로그램 관리까지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주로 교양·취미·여가 강좌를 많이 개설하고 있고, 각 구는 구민대학과 학관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때론 네트워크사업, 주민자치센터거점화 사업 등의 특색 사업도 추진함.
-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
 - 다른 부서와의 연계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기반이 닦인 구를 제외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기관 간 연계 역시 마찬가지임.
 - 대학과의 연계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지만, 교육청과의 연계는 거의 없으며 매우 힘든 상황임.
-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 예산과 인력 부족, 시설·장소 등 인프라의 부족, 추진 시스템의 부재, 프로그램 개발과 제반 관리에서의 어려움,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운영 성과와 한계
 -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저변 확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대학 연계 관학 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으나,
 - 수요층이 주로 시간 사용이 용이한 집단 등 특정 층에 한정되어, 평생교육의 확산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노정함.

2. 개선 요구 분석

○ 델파이 조사 결과분석

-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40.0%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계(교육, 고용, 복지) 구축’이 각각 26.7%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조사 결과분석

-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과제로 각 문항 간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28.6%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을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간 갈등 사안, DB 구축 등)’가 24.7%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평생교육기관 간 또는 관련 부서 간 연계와 협력이 수월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부서 간 연계 활성화 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팀의 업무 및 기능을 개편 또는 확대할 것을 시사함.
- 시설 및 장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구에 대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인 일반 행정직이나 평생교육사 모두 낮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잦은 이동으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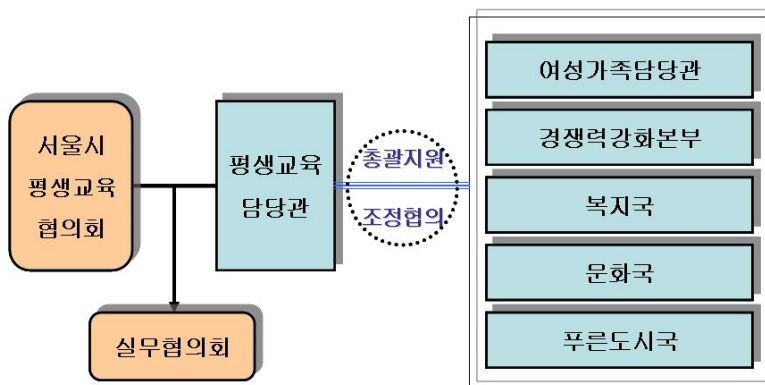
- 평생교육 수요층이 다양해지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층을 참여시킬 방법의 강구가 시급함.
 - 학교교육에서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에서도 계층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을 암시함.
- 주 요구 사항이 네트워크 구축, 정보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서둘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사함.

V.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1. 운영 개선 방안

1) 지원체제 정비 및 구축

- 평생교육 전담 조직의 기능 강화
 - 평생교육담당관은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시킴.
 - 현재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성격의 업무 중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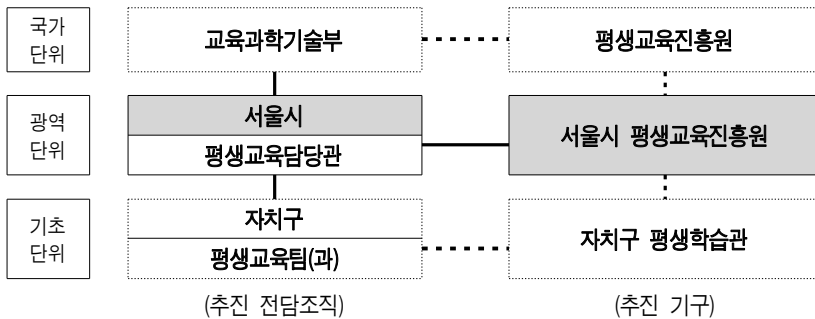
〈그림 2〉 평생교육담당관의 총괄 기능

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는 이관하여 추진하고,

- 유관 업무는 평생교육담당관이 총괄하여 부서 간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효과 저하 등을 방지함.

○ 평생교육 추진기구(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자치구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해 나가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담당자 연수 및 교육, 자치구 사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평생교육 관련 기초 조사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심의 추진체계를 갖추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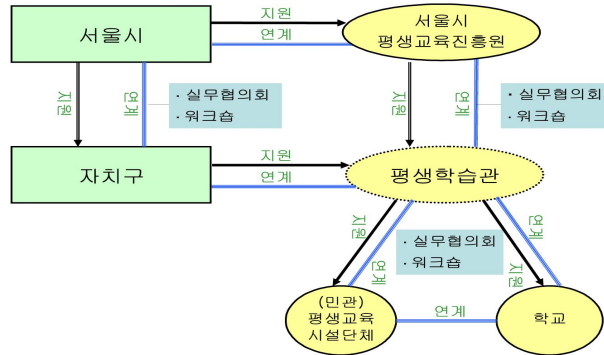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체계

2)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와 자치구 간, 자치구 내 평생교육 관련 시설·기관 간, 서울시와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인적, 사업, 공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 실무자협의회 구성·운영과 지원

-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
 - 시설, 프로그램, 사업, 강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관 간 또는 시와 시민 간 소통 통로로 작용하도록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네트워킹을 강화



<그림 4>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도

2. 정책제언

-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통합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행정부서의 통합 추진이 필요함.
- 자치구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설 간 격차에 대한 지원 : 평생학습관 건립비 등 지원
 - 재정 격차에 대한 지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함.
 - 자치구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기초조사 실시 및 자치구 특화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2장 평생교육법 개정과 서울시의 역할	13
제1절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	13
제2절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	20
제3장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27
제1절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27
제2절 자치구 평생교육 현황 분석	41
제3절 시사점	52
제4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57
제1절 운영실태 분석	57
제2절 개선요구 분석	101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1
제5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129
제1절 운영 개선 방안	129
제2절 정책 제언	135
참고문헌	141
부 록	147
영문요약	185

표 목 차

〈표 2-1〉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협의 기구	17
〈표 2-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항의 개정 전 및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비교	18
〈표 2-3〉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의 신설	20
〈표 2-4〉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책무	24
〈표 3-1〉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2009년 추진 사업 및 예산	31
〈표 3-2〉	2009년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	32
〈표 3-3〉	시민대학의 제25기 전문과정 및 자격증 과정 개설 현황(2009.5)	33
〈표 3-4〉	서울 시민대학 수강 현황(2009.5)	33
〈표 3-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35
〈표 3-6〉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37
〈표 3-7〉	서울시 복지국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38
〈표 3-8〉	서울시 문화국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39
〈표 3-9〉	서울시 푸른도시국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현황	40
〈표 3-10〉	자치구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42
〈표 3-11〉	2009년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관련 예산 현황	44
〈표 3-12〉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유무	46
〈표 3-13〉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시설 현황(I)	48
〈표 3-14〉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시설 현황(II)	49
〈표 3-15〉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구축 현황	51
〈표 4-1〉	면담조사 대상 자치구 및 면담 인원	58
〈표 4-2〉	텔파이 조사 기간 및 회수율	102
〈표 4-3〉	2차 텔파이 조사 내용	103
〈표 4-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향후 서울시의 추진 과제(1차 응답 결과)	104
〈표 4-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향후 서울시의 추진 과제 (2차 텔파이 조사 결과)	106

〈표 4-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추진 과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우선순위)	107
〈표 4-7〉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1차 응답 내용)	108
〈표 4-8〉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10
〈표 4-9〉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우선순위)	111
〈표 4-10〉	설문 응답자 특성	11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9
〈그림 2-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추진기구의 변화	15
〈그림 3-1〉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설치 과정	28
〈그림 3-2〉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비율)	50
〈그림 4-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향후 서울시의 추진 과제	114
〈그림 4-2〉	서울시의 추진 과제(1순위)	115
〈그림 4-3〉	서울시의 추진 과제(2순위)	115
〈그림 4-4〉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	118
〈그림 4-5〉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1순위)	119
〈그림 4-6〉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2순위)	120
〈그림 4-7〉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 역할(3순위)	120
〈그림 5-1〉	평생교육담당관의 총괄 기능	130
〈그림 5-2〉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체계	132
〈그림 5-3〉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도	13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랭그랑(Legrand)이 “평생교육”이라는 논문¹⁾ 내면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부각된지 반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평생교육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사이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로 학령기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학습이 당연시되었다.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한가운데 있는 OECD는 ‘만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선언하면서 21세기에는 모든 개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곽삼근, 2005:70). 유네스코(UNESCO)도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 “평생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며, 그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Delors, et.al, 1996:21, 곽삼근, 2005: 63에서 재인용)고, 21세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1) UNESCO 성인교육국장이었던 랭그랑이 1965년 발표한 논문은 ‘education permanente(영구 교육)’였으며, 이후 유네스코가 이를 영어로 ‘lifelong education’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권두승, 1999: 14-17).

이와 같은 세계적 변화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가 나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생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구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정책적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하였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시·도의 여러 부서에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도였다. 서울시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2007. 12)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동안 시·도 교육감에게 있었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것이다. 법·제도적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궤를 같이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해오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직업훈련 등의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였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에 비해 자치구들은 저마다 약간씩 상황이 다르나, 주민의 평생교육에 힘써 온 자치구도 여럿 존재한다. 이미 7개 자치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²⁾ 주민의 평생교육에 힘써 왔으며, 다른

2) 평생학습도시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 현재 전국 7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자치구 역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단위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해왔던 자치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의 운영 경험 및 실태는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전반적인 평생교육 운영 방안뿐만 아니라 자치구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또는 협력 방안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평생교육 현황과 함께,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 및 한계, 성과 등을 분석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의 내용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법

서울시에서는 2004년에 관악구, 2005년에 성북구, 양천구, 2006년에 영등포구, 2007년에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전면 개정과 그로 인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푸른도시국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각 자치구의 평생교육 현황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운영 실태는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평생교육의 과제 등에 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넷째, 운영 실태와 요구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평생교육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은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필요시 서울시 교육청은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고려하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평생교육 운영의 발전적인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을 검토 분석하여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 및 책

임 등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25개 자치구 평생교육팀에 자료를 요청하여 취합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외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조직담당관 및 복지국 등의 평생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면담조사³⁾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보다 앞서 평생교육에 힘써 온 자치구들의 운영 실태 및 실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치구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자를 면담조사하였다. 면담조사는 2009년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3.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⁴⁾

이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간 추진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평생교육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새로이 모색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해답을 궁구해 보고자 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례 이루어졌다. 1차 델파이 조사 후 응답을 분석하여 2차 조사를 위한 선택형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가의 서면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개방형 델파이 조사 후 선택형 델파이 조사에 사용된 문항과

3)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4장에서 기술한다.

4)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4장에서 기술한다.

동일한 조사지로 서울시청 및 자치구의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4.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1)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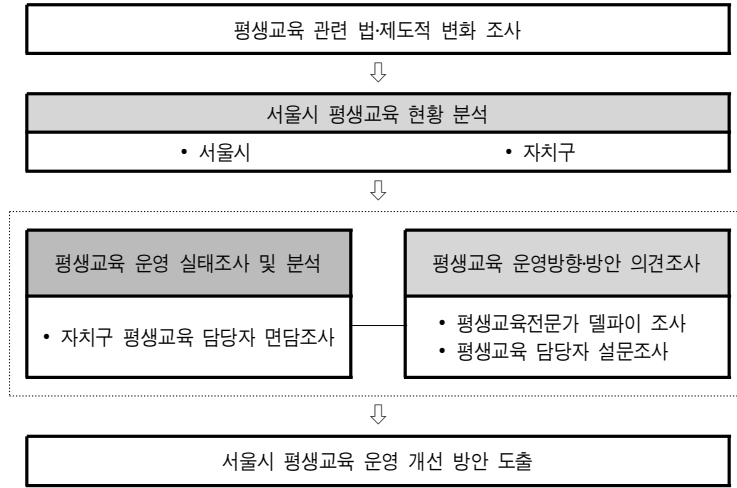
자치구가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그간의 평생교육 운영 성과, 자치구와 달리 서울시가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구(종로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의 평생교육 팀장 또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평생교육을 추진하려는 자치구의 의견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청취하여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2)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 번은 연구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아 연구 전체의 방향과 추가될 내용을 보완하였다. 다른 한 번의 자문회의는 현황 분석,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안에 반영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1〉 연구의 체계

제2장 평생교육법 개정과 서울시의 역할

제1절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
제2절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

제2장

평생교육법 개정과 서울시의 역할

제1절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

1. 개정 배경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평생교육의 모법으로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평생교육법(개정 전 평생교육법)의 제정으로 그 법명과 내용이 전부 개정되었다.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의 업무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평생교육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의 체제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제정 이전에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1990.4)에 의한 독학사학위제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1997.1)에 의한 학점은행제 등의 실시와 더불어 평생교육센터로 나뉘어 추진되는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진흥 전담기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평생교육 전담 기구의 독립 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한승희 외, 2007: 10-50). 2006년부터 평

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전면 개정의 배경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008:3).

우리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 문명으로서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한 바, 이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학습강국, 인재대국의 국정가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등 3개의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설립하여 평생교육진흥 및 평가인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 주요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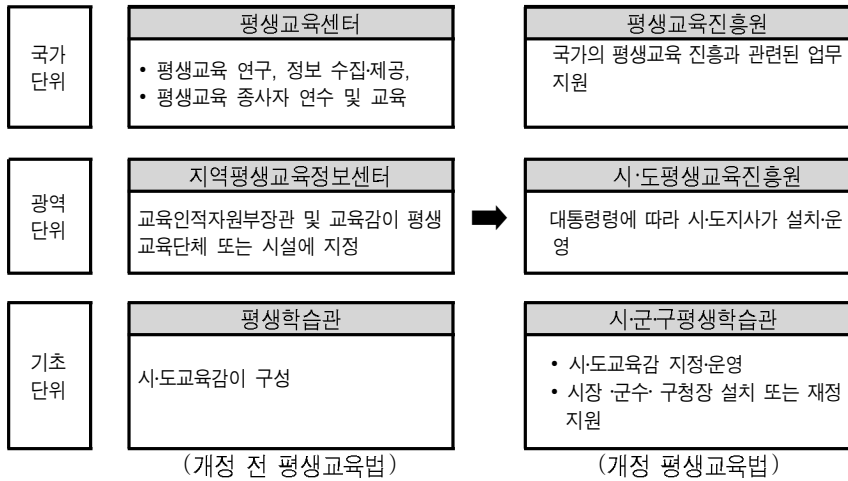
1)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

(1) 평생교육 지원기구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중심으로 하여 평생교육 전담 추진기구가 정비된 것이다. 개정 전 평생교육

법에서는 중앙의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시·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두고, 시·군·구에는 교육감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을 두었다.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으로 전담 추진 기구가 변경·조정되었다.



〈그림 2-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추진기구의 변화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제9조 1항)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평생교육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획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이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2항).

(2) 평생교육 협의기구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협의기구가 중앙, 광역, 기초 단위에 각각 협의기구를 마련하였다는 점 또한 큰 특징이다.

개정 전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구로서 광역 단위에 교육감 소속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였다.⁵⁾ 그러나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단위와 기초 단위에서 평생교육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역 단위에서 평생교육협의체를 시·도지사 밑에 두게 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전과 차이를 보인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협의기구를 행정체제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단위로는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하여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처 차관,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광역 단위로는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였다(제12조). 이 협의회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기구로, 시·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시·도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는 함께 존속한다.

기초단위로는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시·군 및 자치구에 두어 (제14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행정 단위별 평생교육협의기구의 설치 근거와 역할, 구성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협의 기구

수준	협의체	설치 근거	구성	역할
국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법 제10조	위원장(교과부장관)포함 20인,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 등.	평생교육 주요사항 심의
광역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의장(시·도지사), 부의장(시·도교육감) 포함 20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기초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4조	의장, 부의장 포함 12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항 강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 1조(목적)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또한 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

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들의 방법’으로 한정되었던 내용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명시하였다.

〈표 2-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항의 개정 전 및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비교

구분	개정 전 평생교육법	개정 평생교육법
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들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제10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11조),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제12조), 관계기관장 등의 협조(제13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제14조),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제15조 제1항),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관한 사항(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 전의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조항에 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⁶⁾

3)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의 변화

개정 전의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6)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항은 제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평생교육을 학교이외의 포괄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내용에 따라 평생교육 영역을 구체화시켜 정의하고 있다.

4) 기타 개정사항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조항(제15조 제1항)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또한 제39조에 문해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문자해득교육 실시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초·중학교에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법인 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교육 조항을 강화시켰다.

이외에 평생교육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에 관한 규정(제4장)을 강화한 점과 학교의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제29조)을 신설한 점은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점·학력 등의 인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제41조)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을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제2절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

1. 서울시의 역할

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9조)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시·도지사는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의 신설

조항	개정 전 평생교육법	개정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조항 없음	국가 단위	평생교육진흥기 본계획	5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
		광역 단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교육감과 협의)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조항이 없던 것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2)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2조는 연도별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서울시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은 시장이 서울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평생교육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

3)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0조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획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앞서 기술한 의무 조항과 다른 임의 조항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4) 평생교육 통계조사 실시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8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에 관련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서울시도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서울시 자치구의 역할⁷⁾

1) 구의 평생교육 진흥

앞 절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의 강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구 역시 주민에게 평생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임무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 16조(경비보조 및 지원)를 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평생교육법 개정에 의해 서울시 자치구는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실시와 지원을 할 수 있다.

7) 이 연구에서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평생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의 역할 변화도 함께 검토하였다.

2) 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는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도 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구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구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3) 구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제1항에서는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구청장은 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장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지만, 그 실시는 구청장의 자율적 의지에 달려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서울시(서울시장)와 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감)의 책무를 중심으로 개정 전과 후로 비교하여 참고로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책무

구분	개정 전 평생교육법		개정된 평생교육법	
	서울시 (시장)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서울시 (시장)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평생교육 진흥시행 계획 수립	-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협의)
협약체 구성	-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감 소속)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시장 소속)	(협의)
실행 기구 운영	-	• 평생학습관 운영 • 지역평생교육정보 센터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 운영	•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 · 운영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평생교육 시설	-	•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 등록 • 사업장형태 시설 신고 • 언론기관 부설 평생 교육시설 신고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폐쇄 시 통보)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 학력인정시설의 지정·폐쇄인가 • 각종 평생교육기관 신고·등록 관리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승인· 폐쇄,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 고· 폐쇄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 설 신고·폐쇄
기타	-		• 평생교육 통계조사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재정 지원 가능	• 프로그램 지정·취소(시행령 제 71조) 및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원 • 문자해득 교육심사위원회 설치 (시행령 제76조) • 학교의 평생교육 강화

제3장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 제1절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 제2절 자치구 평생교육 현황 분석
- 제3절 시사점

제3장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추진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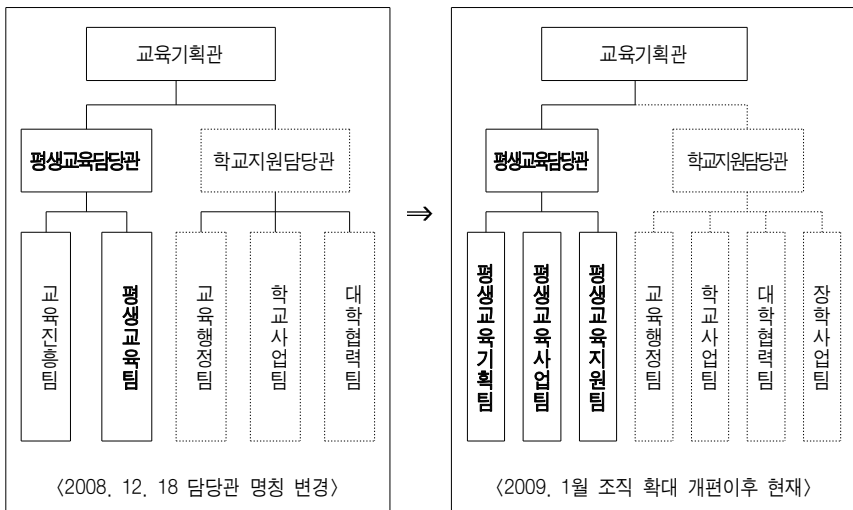
1) 전담 조직과 인력

서울시는 2006년 9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그 당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국,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국, 환경국 등이었으며, 교육기획관이 신설된 직후에는 평생교육팀이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교육기획관이 확대 개편되면서 2007년 5월에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하면서 평생교육팀이 신설되었다. 이 때 교육기획관 밑에 교육지원담당관과 교육사업담당관을 두었다. 교육사업담당관 산하에 학교진흥팀과 평생교육팀으로 구성하였다. 당시 평생교육팀의 주요 업무는 영어 마을 조성, 초등학교 CCTV 설치 및 학교급식 지원이 주 사업으로,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거의 없었다.

서울시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을 구비하게 된 것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을 개정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부터이다.

서울시는 2008년에 들어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정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먼저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5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 18일 교육사업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개편하고 2개 팀에 10명을 배치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평생교육담당관 산하의 2개 팀을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사업팀, 평생교육지원팀의 3개 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인력도 12명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평생교육담당관을 만들면서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다.⁸⁾



〈그림 3-1〉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설치 과정

8)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확대 개편되었어도 서울시 타 부서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평생교육담당관으로 이관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부분은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여성 및 청소년 직업능력개발은 여성가족정책관의 소관이며, 노인 및 소외계층 대상의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2. 법·제도적 지원체제

1) 조례 제정

서울시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2008.5)하여 운영하면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009년 2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여, 2009년 3월에 공포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법 지원체제를 갖추었다 (조례는 <부록 1> 참조).

2)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평생교육법 제12조에는 시·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평생교육시행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시·도지사를 의장, 시·도 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하여 시·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8조에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조항에 의해 2009년 3월 서울시는 시장을 의장, 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2명을 위촉하여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⁹⁾ 관련 공무원으로는 서울시에서 문화국장, 복지국장, 교육기획관의 3명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평생교육국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의원 1명이 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었다.

9) 2009년 5월 18일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3.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및 사업

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8년 5월 구성된 평생교육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9.30)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Global Top 10의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세우고, 평생교육지원체제 정립, 교육역량 강화, 시민참여 촉진 등 3가지 주요 과제를 세우고 2009년도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사업

(1)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서울시의 평생교육 전담 조직은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 산하의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는 2009년 사업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 초등학교주변 CCTV설치,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지원 등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표 3-1>참조).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평생교육과 관련이 높은 사업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이며, CCTV 설치, 영어마을, 학교급식지원 등은 다소 평생교육과 거리가 있는 사업이다. 이는 평생교육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교육사업담당관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도 함께 넘어왔기 때문이다.

〈표 3-1〉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 2009년 추진 사업 및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예산	979	6,003	8,698	3,530

출처 : 서울시 경영기획실(2009),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 평생교육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신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신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자치구나 자치구 내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신청한 사업으로 신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지원비는 프로그램당 적게는 184만원에서 많게는 680만원까지 지원되었다.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에 총 3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총 지원액은 1억 7천 879만원이다.

둘째,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자치구와 지역 내 대학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2009년 현재 18개 자치구와 협력한 대학의 53개 프로그램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시민제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민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발적 학습활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시민 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현재 우수 프로그램 사업은 2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약 7천 895만원이다. 학습동아리 사업은 14개 학습동아리에 총 2천 2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 2009년도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신소외 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과 지역간 협력사업	시민제안 평생교육프로그램		계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예산	178,790	600,000	78,953	20,210	877,953
선정 수	39	53	21	14	127

출처: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실(2009), 내부자료

2) 서울시 타 부서의 평생교육 관련 현황

평생교육담당관 외에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평생교육담당관이 신설되기 전에 부서별로 해 오던 사업이거나 부서 고유의 사업이지만 평생교육의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시의 부서는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강화본부, 복지국, 문화국, 푸른도시국 등이다.

○ 조직담당관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은 서울 시민대학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서울 시민대학은 서울시민과 직장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현재 서울시립대 본교와 청계천 분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시민대학은 2007년 개설하여 2009년 현재 25기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대학은 서울학, 자치시민과 생활경제, 국제이해, 문화교양, 외국어, 컴퓨터, 전문 과정 및 자격증 과정 등 7개 분야에서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문과정 및 자격증 과정은 서울 시립대 본교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II), 중소기업세무과정이, 청계천 분교에는 한국어교육양성과정(I), 그린홈관리사가 개설되어 있다(<표 3-3> 참조).

〈표 3-3〉 시민대학의 제25기 전문과정 및 자격증 과정 개설 현황(2009.5)

(단위: 명)

구 분	강 좌	정원
시립대 본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Ⅲ)	30
	그린홈관리사	30
청계천 본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Ⅱ)	
	중소기업세무과정	30

출처: 서울시 조직담당관실(2009), 내부자료

서울 시민대학은 1년 2개 학기로 운영되며, 동·하계에 4주의 특강이 이루어진다. 학기당 수강비는 4만원에서 전문과정의 경우는 50만원이다. 2009년 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73개 강좌에 2,042명이 수강하고 있다. 서울 시민대학의 2009년 총 지원 예산은 8억 9,500만원이다.

〈표 3-4〉 서울 시민대학 수강 현황(2009.5)

(단위: 명, 백만원)

개설 강좌		수강 인원		예산
시립대 본교	청계천 본교	시립대 본교	청계천 본교	
12개	61개	303	1,739	895
총 73개		총 2,042		

출처 :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2009), 2009 성과주의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살펴보

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양성평등강좌 지원이 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여성 능력개발원을 비롯하여, 서부, 중부, 남부, 북부 여성발전센터 등 4곳에서 직업전문교육, 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신규 1곳을 포함한 여성인력개발센터 15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에게 전문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양성평등강좌의 지원 사업으로 270개 강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여행(女幸)프로젝트의 기관별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며, 45개 기관에 전문가 순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과 청소년 대안 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20개소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숙제지도나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사업은 서울시청소년대안교육센터 등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문교실이나 자치구의 한문예절교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건강가족 만들기 정기 강좌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이 있다.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 센터의 건강가족만들기 정기 강좌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도사를 파견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국내 적응과 능력개발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정책관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는 총 190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담당 부서	사업	예산	총계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운영	8,311	19,089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551	
	양성평등강좌 지원	44	
	여행프로젝트 기관별 교육	51	
청소년담당관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34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647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 사업	1,034	
저출산대책담당관	건강가족지원센터	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099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2009), 2009년 성과계획서

○ 경쟁력강화본부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 개발 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진흥관 고용창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는 시립 직업전문학교 운영,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있다.

시립 직업전문학교로는 서울종합, 한남, 엘림, 상계 직업전문학교의 4개가 있으며, 현재 38개 직종 67개 학과 3,707명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립 직업전문학교는 만 15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서울 시민에게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50세에서 61세까지의 준고령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한편, 엘림 직업전문학교는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사업은 자매도시 청소년 60명을 초청해 가구 설계제작, 자동차 정비 등 7개 학과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1개월에서 10개월 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24억 7천 2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600명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은 예산이 5천 800만 원으로 비록 적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전통 시장 상인 아카데미, 농업 기술 전문교육,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 농업이 있다.

전통시장 상인 아카데미는 20개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업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새 기술 실천교육이나 농업지도자 현지교육 및 귀농희망자 교육 등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 농업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텃밭 가꾸기 기술 지도, 어린이 자연학교 운영 등이다.

이외에 관광객을 환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광진흥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호스피털리티 특별 아카데미가 있다.

이상의 경쟁력강화본부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 <표 3-6>과 같다.

〈표 3-6〉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단위: 백만원)

담당 부서	사업	평생교육 관련 내용	예산	계
경제진흥관 고용창업담당관	시립직업학교 운영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 대상으로 38개 직종, 67개 학과 3,707명에게 6개월~1년 교육	17,173	약 21,043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의 서울시민 600명 대상으로 1개월에서 10개월 교육	2,472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	엘림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매도시 청소년(18~24세) 60명 대상 가구설계 제작, 자동차 정비 등 7개 직종에서 6개월에서 1년 훈련	923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한국어 교실 등), 의료사업	58	
경제진흥관 생활경제담당관	전통시장 상인 아카데미	20개 시장 상인 대상	100	275(일부)
	농업기술 전문교육	농업 전문교육 및 귀농희망자 교육 등	42(일부)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우수 텃밭 가꾸기 기술지도, 가정채소 상자재배 기술보급, 전원생활교육(30회, 1500명)	275(일부)	
관광진흥담당관	호스피탈리티 특별 아카데미	자치구 직원 및 일반시민 대상 관광객 환대 의식 교육	756(일부)	

출처: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2009), 2009년 주요업무계획

○ 기타 부서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복지국, 문화국, 푸른도시국 등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센터의 자원봉사자 교육, 9988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학교 IT 정보화 교실,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과 희망의 인문학 강좌 개설 등이 있다. 총 15억 6천 7백

만원의 예산으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희망의 인문학 강좌 사업은 저소득층 및 노숙인에게 인문학 위주의 소양 및 교양 강좌를 제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다(<표 3-7> 참조).

〈표 3-7〉 서울시 복지국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예산	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문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359 일부	약 1,567
	「희망의 인문학」 강좌	저소득층 및 노숙인 1,500명 이상 6개월 과정 (약120시간), 2기 인문학 위주의 소양강좌 및 다양한 체험학습	800	
노인복지과	9988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학교 IT 정보화 교실	130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278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국(2009), 2009 성과주의예산

문화국의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교육, 어린이 방학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체육진흥과에서 생활체육캠프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진흥사업, 청소년 풋살 교실 등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33억 4천 3백만원이다.

이외에도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및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평생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표 3-8> 참조).

〈표 3-8〉 서울시 문화국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예산		
			단위	소계	계
문화 예술과	시민문화예술교육	노인대상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502	3,343	3,873
	어린이 방학문화 예술 교육	방학기간 중 초등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	200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 동자 등 문화권장 계층 대상 교육	268		
체육 진흥과	어린이 축구교실	-	170		
	생활체육 육성 진흥사업	생활체육캠프교실 운영	95		
		생활체육진흥사업 (레크레이션 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1,021		
		청소년 풋살교실	300		
		여성 축구교실	550		
		뉴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47		
		어린이 축구교실	190		
시립체육 시설관리 사업소	잠실운동장 생활체육 강습교실 운영	잠실운동장 체조관 및 제1수영장에서 에어로빅 포 함 15개 반 등	214	534	
서울 역사 박물관	몽촌 역사관 교육	몽촌 어린이 역사교실(2회)	20		
		꿈마을 체험교실(2회)	21		
	박물관 교육 (서울 역사박물관)	박물관 대학(2회), 박물관 체험교실(2회), 어린이역 사탐험교실(30회), 전통문화체험교실(20회), 청소년 박물관교실(20회), 가족체험교실(24회), 외국인역사 문화교실(10회), 올망졸망 박물관 놀이교실(20회), 교사대상 프로그램(4회), 찾아가는 박물관교실(5회)	177		
	청계천 문화관	청계천 역사문화학교	47		
		청계천 역사·도시환경학교	32		
서울 시립 미술관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의 만남, 수채화 실기(3월), 전 시와 함께하는 미술교실(3회씩 3차, 4~5월) 영화와 미술, 장애어린이 미술교실, 한국미술의 만 남, 어린이 미술교실(5월) 육명심 교수 초청 특강(5월), 참가자 4700명	23		
	찾아가는 미술 감상 교실	총 52회	-		
	도슨트 교육과정		-		

출처 : 서울특별시 문화국(2009.) 2009년 주요 업무계획

한편, 푸른도시국 역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인 숲속여행 프로그램, 자연학습교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산하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등에서도 크진 않지만 환경문화프로그램 및 자연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푸른도시국 및 산하 기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표 3-9> 참조).

〈표 3-9〉 서울시 푸른도시국 2009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현황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및 기관	추진 사업	사업 내용	예산	계
푸른도시정책과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인왕산 등 19개 산에서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안내로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탐방체험	159	525
조경과	시민참여 녹지조성	시민녹화교실 운영(8개소, 25회)	45	
자연생태과	자연생태 체험교실운영	생태계보전사업 일환	82	
월드컵공원 관리사업소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환경문화프로그램(미술프로그램, 시민녹화프로그램 등)	9	
		생태학습프로그램	34	
서울대공원	자연학습교실 운영	동물식물, 곤충, 단체교실 운영, 33개 프로그램 63,000명	184	
	별자리체험교실 운영	-	10	
	(동물병원)진료 체험 교실	-	2	

출처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2009.) 2009년 주요 업무계획

제2절 자치구 평생교육 현황 분석

1. 추진 조직

1) 전담 조직과 인력

2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는 일찍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추진체계를 구비하지 못한 자치구도 있어 그 실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2009년 현재 평생교육 전담팀을 구성한 자치구는 22개 자치구이며, 평생교육팀이 없는 자치구는 3개 구로 금천구, 동대문구, 서초구이다. 이들 3개 구는 평생교육 전담팀이 없으나 금천구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 동대문구는 교육진흥과 교육진흥팀, 서초구는 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팀을 구성한 자치구의 행정조직을 보면 교육지원과 또는 교육정책과 혹은 교육진흥과에 소속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광진구는 사회복지과, 성동구는 주민생활지원과, 종로구는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팀이 소속되어 있다.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과 더불어 전담 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치구별 평생교육 전담 인력은 양천구가 8명으로 가장 많으며, 강남구, 영등포구가 각 8명, 강동구, 강서구가 각 7명 등이며, 이들 구를 제외한 자치구는 2명에서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구는 금천구와 서초구로, 평생교육 전담팀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업무 담당자 1명만 있는 실정이다. 인력 역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의 경우 성북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6~9명의 담당자가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 강남구 등이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사를 고용하여 배치하고 있는 자치구는 평생학습도시 중 성북구를 제외한 강동구,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마포구 등 6개 구 외

에 강남구, 서대문구, 송파구, 중랑구, 성동구를 합쳐 총 11개 구이다.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25개 구 중 반수에 못 미치는 44%이며, 총 15명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자치구 평생교육 추진 전담조직 및 인력

(단위 : 명)

구분	전담 조직 유무	인력			비 고
		일반 공무원	평생 교육사	계	
강남구	○	6	2	8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강동구	○	5	2	7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강북구	○	4	0	4	교육정책과 평생교육팀
강서구	○	6	1	7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관악구	○	4	2	6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광진구	○	3	0	3	사회복지과 평생교육팀
구로구	○	3	0*	3	교육진흥과 평생교육팀
금천구	×	1	0	1	문화체육과 교육지원팀
노원구	○	4	(3)**	4	교육진흥과 평생교육팀
도봉구	○	3	0	3	교육진흥과 평생교육팀
동대문구	×	2	0	2	교육진흥과 교육진흥팀
동작구	○	3	0	3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마포구	○	5	2	7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서대문구	○	3	1	4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서초구	×	1	0	1	문화행정과 교육지원팀
성동구	○	5	1	6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팀
성북구	○	3	0	3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송파구	○	6	2	8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양천구	○	8	1	9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영등포구	○	6	2	8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
용산구	○	2	0	2	교육진흥과 평생교육팀
은평구	○	2	0	2	교육진흥과 평생교육팀
종로구	○	3	0	3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중구	○	4	0	4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중랑구	○	4	1	4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계	22개구 유	11	15(3)	112	

○: 유 × : 무

* : 2009년 5월 1일자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평생교육사 채용

** : 노원구는 일반 공무원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지는 않음.

※ 연구진이 서울시 협조를 얻어 각 자치구를 통해 취합한 자료를 정리, 재구성함.

2) 예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 예산은 국고와 시비 및 구비를 포함하여 106억 7,548만 1천원이며, 이 중 구의 자체 예산은 96억 651만 천원이다. 2007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강서구와 강동구, 마포구는 평생학습도시 사업비로 2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해 평생교육 예산이 넉넉한 편이다.

평생교육 예산은 자치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는 이에 대한 구 예산이 약 13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강남구는 약 10억 5천만 원으로 그다음으로 많다. 이에 비해 은평구는 3천 6백만 원, 금천구는 약 5천 3백만 원이며 서초구는 예산이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다¹⁰⁾ (<표 3-11> 참조).

자치구 간 예산의 차이가 큰 이유는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큰 몫을 하지만, 무엇보다 평생교육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나 또는 신청을 준비하는 자치구 등은 추진 사업이 많아 예산이 많은 반면, 아직 전담 평생교육팀을 갖추지 못한 서초구, 금천구 등은 예산이 거의 없다. 설사 팀을 갖췄다 하더라도 아직 인력이 적어 평생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자치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많은 자치구들이 평생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 간 평생교육 예산을 분석해 보면 팀이나 인력의 구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예산 역시 적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구 간 차이는 서울시가 보정해야 할 것이다.

10) 서초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가 1명이며, 2009년에 와서 그 업무를 시작하여 평생교육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은 상태이다. 면담조사에서 2009년 추경예산으로 평생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2009년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총예산	국고	시	구
강남구	1,057,740	0	0	1,057,740
강동구	451,280	200,000	0	251,280
강북구	153,680	0	0	153,680
강서구	532,700	200,000	0	332,700
관악구	842,927	0	0	842,927
광진구	197,556	0	0	197,556
구로구	428,860	0	0	428,860
금천구	53,980	0	0	53,980
노원구	284,628*	0	0	284,628
도봉구	549,726	0	0	549,726
동대문구	141,620	23,500	0	118,120
동작구	125,513	0	0	125,513
마포구	600,377	200,000	0	400,377
서대문구	164,820	0	0	164,820
서초구	0	0	0	0
성동구	1,068,588	115,400	57,700	895,488
성북구	384,460	0	0	384,460
송파구	1,505,183	20,845	90,245	1,394,093
양천구	435,075	0	0	435,075
영등포구	426,780	90,000		336,780
용산구	281,684	0	0	281,684
은평구	36,000**	0	0	36,000
종로구	442,804	0	0	442,804
중구	253,400	21,000	31,780	200,620
종랑구	256,100	18,500	0	237,600
전체	10,675,481	889,245	179,725	9,606,511

* : 평생학습센터 건립예산 6,000,000천원(2009년 시예산 포함 3,200,000천원)은 포함되지 않음.

** : 평생교육팀에서 주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예산 중 도서관 관련 예산 2,628,820천원(국비 54,500천원, 시비 54,500천원, 구비 2,519,820천원)은 제외함.

2. 법·제도적 지원체제

1) 조례 제정

평생교육 관련 조례는 서초구와 동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가지고 있다. 관악구가 2004년 처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후, 다른 자치구들이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일찍이 구비하고 있는 편이다.

아직 조례가 없는 서초구는 2009년에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의원 입법으로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동작구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시·군 및 자치구에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군·자치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해 서울시의 자치구들 역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한 자치구는 18곳이며, 아직 구성하지 못한 자치구는 7곳이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없는 자치구는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 중구, 용산구로 이들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여부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2>와 같다.

〈표 3-12〉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유무

구분	조례명	제정일	평생교육협의회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2008. 3. 7	유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6. 10. 4	유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 12. 31	유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6. 12. 29	유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2. 26*	유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08. 3. 19	유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7. 5. 11	유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2008. 10. 10	무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2007. 10. 25	유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1. 07	유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 5. 15	무
동작구	-	-	무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2007. 5. 3	유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2008. 5. 15	유
서초구	-	-	무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2007. 5. 18	유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2005. 10. 17	유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2007. 9. 21	유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학습 조례	2005. 3. 31	유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2006. 6. 26	유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 12. 31	무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8. 05. 14	무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7. 4. 6	유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9. 3. 30	무**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7. 3. 27	유

* :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2005. 2. 7)하였으나, 폐지하고 새로 제정

** : 중구는 4월 중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예정

※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작성됨.

3.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현황

1) 시설

서울시 자치구별 평생교육 시설은 주민자치센터 434개를 포함하여 총 2,292개이다(<표 3-12> <3-13> 참조).

평생학습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등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 수는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25개 자치구에 총 701개이며,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면 총 1,135개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66개로 가장 많고, 종로구, 중구도 60개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영등포구, 금천구, 용산구, 마포구 등은 10여개로 평생교육 관련 시설이 적은 편이다. 평생교육 관련 총 시설 수면에서 보면 자치구 간 큰 차이가 있다.

평생학습관은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가 각 1개씩 있으며, 관악구가 2개의 평생학습관을 가지고 있다. 강남구는 13개의 평생학습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한 것이다.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노원구의 평생학습관은 서울시 교육청 직영이다(<부록 2> 참조). 도서관, 미술관은 강남구가 각각 14개와 96개(사립 포함)로 많은 반면, 도봉구는 각각 1개와 0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복지관의 자치구 간 시설 수를 보면 강서구가 13개, 노원구가 11개 등으로 많은데, 이는 공공 임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사회복지관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자치구 간 평생교육 시설의 차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여건이 낫기 때문에 앞으로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3-13〉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시설 현황(I)

(단위: 개)

구분	평생 학습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	공공 체육 시설	여성 회관	문화 센터	청소년 수련관	문화원	계	
											소계	총계
강남구	13	14	5	96	9	4	4	17	3	1	16(22)	188
강동구	1	5	1	0	5	3	0	5	1	1	22(17)	39
강북구	0	3	0	0	6	3	0	1	1	1	15(13)	28
강서구	0	5	1	0	13	5	1	1	2	1	29(20)	49
관악구	2	3	2	1	5	5	2	1	1	1	23(21)	44
광진구	1	3	0	0	4	4	1	2	1	1	17(15)	32
구로구	1	5	1	0	6	3	1	5	1	1	24(15)	39
금천구	0	3	0	0	4	2	1	0	1	1	12(10)	22
노원구	1	3	0	0	11	4	1	3	1	1	15(21)	48
도봉구	0	1	1	0	8	2	1	2	4	1	20(14)	34
동대문구	0	2	1	0	3	4	2	2	1	1	16(22)	38
동작구	0	3	1	0	10	3	1	1	3	2	24(15)	39
마포구	1	4	0	0	4	1	0	1	1	1	13(16)	29
서대문구	0	2	2	0	6	1	1	1	2	1	16(14)	30
서초구	0	1	3	0	5	4	1	0	0	1	15(18)	33
성동구	0	4	0	0	4	3	0	1	1	1	14(17)	31
성북구	1	1	5	1	8	3	1	2	1	1	24(20)	44
송파구	1	4	1	2	9	1	1	2	2	1	34(26)	50
양천구	1	2	2	0	7	6	1	2	1	1	23(18)	41
영등포구	1	2	0	0	3	1	0	0	3	1	11(18)	29
용산구	0	2	2	1	3	1	1	0	1	1	12(16)	28
은평구	0	2	0	0	9	2	0	1	1	1	16(16)	32
종로구	0	7	35	11	3	1	0	2	0	1	60(19)	79
중구	0	1	9	1	3	35	1	4	1	1	56(15)	71
중랑구	0	5	0	0	10	2	0	0	2	1	24(16)	38
전체	24	120	72	113	158	99	22	56	36	26	701(434)	1,135

() : 주민자치센터 수

※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작성됨.

도서관, 박물관 등 외 학교부설평생교육 시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총 1,124개이

다. 이 중 강남구가 244개로 가장 많으며, 관악구가 4개, 금천구가 1개로 적어 자치구 간 시설 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

〈표 3-14〉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시설 현황(II)

(단위 : 개)

구분	학교부설	대학부설	원격 교육기관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지식인력 개발	공연장	기타	계
강남구	20	5	68	8	7	6	90	40	0	244
강동구	1	1	5	0	0	2	0	0	21	30
강북구	2	2	6	1	1	6	9	1	5	33
강서구	2	3	0	4	1	0	0	1	15	26
관악구	0	0	2	1	0	0	0	1	0	4
광진구	22	3	0	0	0	5	0	1	0	31
구로구	1	2	0	0	0	0	0	4	15	22
금천구	0	0	0	0	0	0	0	1	0	1
노원구	1	6	0	0	0	1	1	5	3	17
도봉구	0	1	0	0	0	1	0	1	0	3
동대문구	0	2	0	0	0	0	0	0	0	2
동작구	0	5	18	1	3	2	6	0	0	35
마포구	0	2	29	11	1	0	0	0	0	43
서대문구	0	9	20	0	1	2	9	1	1	43
서초구	0	1	0	0	0	0	0	13	0	14
성동구	24	2	1	0	0	2	4	1	0	34
성북구	0	6	6	1	0	0	3	2	24	42
송파구	1	1	0	1	0	1	0	2	2	8
양천구	0	0	0	0	0	0	0	1	0	1
영등포구	0	0	0	2	6	3	29	1	23	64
용산구	0	1	21	1	3	1	5	3	1	36
은평구	0	1	0	0	0	0	1	1	1	4
종로구	0	3	75	2	8	4	37	77	3	209
중구	1	4	19	3	8	1	33	30	68	167
중랑구	0	0	0	1	0	0	0	0	10	11
전체	75	60	270	37	39	37	227	187	192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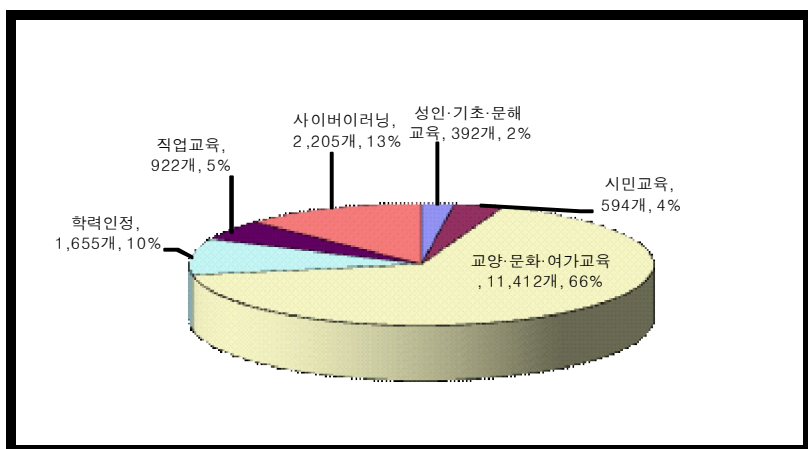
※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작성함.

2) 프로그램

각 자치구의 평생교육 관련 시설에서 제공하는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성인·기초·문해교육, 시민교육, 교양·문화·여가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 직업교육, 사이버·이러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성인·기초·문해교육이 392개, 시민교육이 594개, 교양·문화·여가교육이 11,412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이 1,655개, 직업교육이 922개, 사이버·이러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2,205개로 총 17,177개에 달한다(<표 3-15>참조).

프로그램별로는 교양·문화·여가교육이 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직업교육은 5%만이 제공되고 있다(<그림3-2> 참조).



〈그림 3-2〉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비율)

〈표 3-15〉 서울시 자치구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구축 현황

(단위 : 개)

구분	정보제공	홈페이지	프로그램						
			성인·기초· 문해 교육	시민교육	교양문화 여가교육	학력인정	직업교육	사이버 이러닝	총계
강남구	유	유	5	20	1,000	0	70	270	1,365
강동구	유	유	9	4	343	0	0	350	706
강북구	유	유	8	10	920	29	58	8	1,033
강서구	유	유	17	2	3	5	1	48	76
관악구	유	유	29	10	309	16	94	2	460
광진구	유	유	39	267	1,105	0	103	0	1,514
구로구	유	유	3	21	950	0	114	205	1,293
금천구	무	무	1	0	1	0	0	0	2
노원구	유	유	37	15	621	1	14	102	790
도봉구	무	무*	11	9	644	0	38	92	794
동대문구	유	무	7	0	5	0	0	0	12
동작구	유	무	23	21	1,361	498	35	336	2,274
마포구	유	유	20	1	64	0	69	4	158
서대문구	유	유	24	1	723	0	12	36	796
서초구	무	무	16	1	52	0	10	26	105
성동구	유	유	1	2	203	0	7	100	313
성북구	유	무**	32	4	756	1,012	160	236	2,200
송파구	유	유	25	149	954	4	79	52	1,263
양천구	유	유	3	14	19	0	7	34	77
영등포구	유	유	6	6	25	0	8	0	45
용산구	무	무	4	0	300	90	2	100***	496
은평구	유	유	12	17	560	0	33	7	629
종로구	무	무	1	1	142	0	00	1	145
중구	무	무	59	17	349	0	8	63	496
종랑구	유	유	0	2	3	0	0	130	135
전체	19	16	392	594	11,412	1,655	922	2,205	17,177

* : 도봉구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 예정

** : 성북구 평생교육 홈페이지 5월 중 구축 예정

*** : 용산구 사이버이러닝 교육 4월 중 실시 예정

※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작성됨.

한편, 평생교육 홈페이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각 자치구는 주민이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나 사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한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등 총 16곳이며, 아직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못한 자치구는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총 9곳이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은 9개 자치구 중 동대문구, 동작구, 성동구는 홍보지 등 다양한 매체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도 구축하지 않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자치구는 금천구, 도봉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6곳이다(<표 3-15>참조).

제3절 시사점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평생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된 점이다.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 평생교육진흥의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부족한 서울시나 자치구들은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에 서둘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자치구 역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몇 개의 자치구를 제외하고 평생교육법 개정 후에 추진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원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및 방안을 마련할 때 조례와 협의회 등 평생교육 추진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적 정비를 일부 자치구보다 늦게 마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진 기반을 일찍 구축한 일부 자치구는 평생교육 정책을 앞서서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가 방안 및 정책수립 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에 추진 전담조직인 평생교육담당관이 만들어졌으나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관련 부서에서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경쟁력강화본부와 여성가족정책관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예산도 평생교육담당관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보다 많다. 이 점은 중앙의 부처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고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의 평생교육 전담 추진 조직인 평생교육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시의 평생교육 예산이 적다는 점이다. 평생교육담당관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조직과 인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점도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 예산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평생교육 추진주체로서의 책무를 시장에게 새로 부여하였어도 자치단체 역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예산을 확대·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울시 자치구의 평생교육 현황 분석에서 보듯이 자치구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시설과 예산에서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시설과 예산은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간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제1절 운영실태 분석

제2절 개선요구 분석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제1절 운영실태 분석

1. 면담 조사 개요

1) 대상자 선정 및 면담 실시

면담조사는 2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시 자치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7개 자치구를 비롯하여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주력해 온 자치구가 있는 반면, 아직 평생교육 팀이 구성되지 않은 자치구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면담조사를 계획하였다.

우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는 모두 면담조사를 하였다. 또한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적 평생교육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구,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며 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구, 평생교육 팀이 없는 자치구 중에서 두서너 자치구를 면담 조사하였다.

이런 기준에 의해 25개 자치구를 구분하고 면담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여 승낙한 자치구를 방문하여 평생교육 관련 담당자, 즉,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 평생학습사를 면담하였다. 25개 자치구 중 13곳에서 총 21명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를 면담조사하였다.

〈표 4-1〉 면담조사 대상 자치구 및 면담 인원

구 분		해당 자치구	계	면담 인원(명)
평생학습도시		관악, 성북, 강동, 양천, 강서, 마포, 영등포	7	12
非 평생학습도시	조직 구성, 활성화	강남, 노원,	2	2
	조직 구성, 미활성화	강북, 은평,	2	5
	조직 미구성	동대문, 서초	2	2
총 계			13	21

면담조사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개발하여 2009년 3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구에 따라서 담당자와 개별 면담을 하였으며, 때로는 팀의 2~3명을 함께 면담하였다. 면담은 아래 제시한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이상 이루어졌다. 면담은 현장에서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고 나중에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었다. 녹취록을 읽어 가면서 코딩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서에 활용하였다.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에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2) 조사 내용

면담조사는 그 목적이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구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구 평생교육 운영 현황

- － 운영 추진 상황(전담 행정조직 및 평생학습관 등)
- － 중점 추진 프로그램 또는 사업
- － 다른 부서 또는 평생교육 기관, 혹은 교육청과의 협력 및 연계 정도
- － 관련 예산 및 재정 상황, 외부 지원 정도

- 자치구에서의 어려움
 - － 평생교육 사업 수행 시 어려운 점 또는 애로사항(정보의 부족, 예산 및 인력의 부족, 단체장의 무관심 등)
 - － 담당 공무원(센터 직원, 평생교육사 등)으로 겪는 큰 어려움
- 자치구의 평생교육 성과와 한계
 - － 구민 대상 평생교육사업의 성과
 - － 한계나 문제점
- 자치구 평생교육 추진 및 진흥에 대한 의견
 - － 추진 중인 평생교육에 직업교육 포함 여부
 - － 부서 간 별도 운영되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통합에 대한 의견
 - － 자치구에서 평생교육 진흥의 성공 요건(자치단체장의 의지,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역구민의 열망, 서울시·국가의 지원 등)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자치구와 서울시 역할
 - － 자치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견
 - － 서울시가 새로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견

2. 면담 조사 결과

1) 평생교육 운영 실태

(1) 운영 방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로 직영이 많으며, 간혹 구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며, 때로는 대학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일찍 기반을 닦거나 평생학습센터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관악구, 양천구 등)는 담당 공무원 또는 평생교육사가 센터에 배치되어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직영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좌 개발에서 강사 섭외 및 수강 접수까지 맡고 있어 일의 부담이 크다. 비교적 조직과 인력을 구비한 구에서는 직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팀원도 한두 명인 경우는 직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례 1

직영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요. 할 수도 없고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D구 팀장).

한편, 구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직영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직영을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업무 부담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구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굳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담당자가 있다. 평생교육팀이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팀은 오히려 기존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2

그렇게 직접 운영하면 오히려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회계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더 힘들 거 같아요. 통제 있을 거 같아요.(중략)..... 과연 관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직접 교육기관을 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 기관들한테 지원해주고요(B구 팀원).

직접 운영하는 구도 때론 운영방식이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3

운영 형태가 사설학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사설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쪽으로 지향하나 운영형태는 사설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요(H구 과장).

(2) 운영 프로그램

① 운영 강좌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는 상당히 다양하며, 구마다 지역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특히, 많이 운영하는 강좌는 교양·취미·여가 강좌로, 주민의 요구가 많고 원하기 때문이다.

사례 4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해요. 교양이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이 절실했던 건데,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요(A구 평생교육사).

교양·취미·여가 관련 강좌는 수요층이 두터워 많은 구에서 가장 많이 개설하고 있으며, 구에 따라 좀 더 질을 보강하고 차별적인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마포구와 노원구는 대상층이 제한되어 수강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민들의 반응이 좋게 나타났다.

사례 5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70% 이상이 스포츠 댄스라든지 하는 건데 모든 16개동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있고 필요도 하지만 그 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문예술이라든지 요구를 많이 하세요. 인문학 강좌를 작년 8월에 샘플로 한 동에서 2개 강좌를 6주 과정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으

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지원 받은 것 가지고 12월부터 4학기로 해서 6주짜리로 해서 두 개동하고 평생학습센터 소규모로 만든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강좌를 일주일에 3일을 야간에 7시부터 9시까지요. 동양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요(마포구 팀장).

한편, 구에 따라서 직업교육 및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 강좌나 자격증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 강좌 수는 교양·취미·여가 강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강서구의 경우, 새롭게 지역 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자격증 과정을 6개 운영하고 있다.

사례 6

저희가 작년에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사, 심리상담사, 부동산전문상담사, 어린이 영어지도사, 동화교육지도사 이런 거 했고요. 그 전에도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1기는 2007년에 했는데 그때는 부동산하고 영어동화구연 이런 거 했었는데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폐강하고, 그 다음에 그 때 그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로 들어가는, 신설한 게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치료사, 심리상담사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미리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이외에 구에 따라서는 경매강좌나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부모교육 강좌를 운영하여 다른 구와 차별화하기도 한다. 양천구는 주민들의 요구가 컸던 경매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강동구와 강서구는 부모코칭 과정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수 회에 걸쳐 개설하고 있다.

사례 7

평생학습센터에 상시 필요한 강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조사를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필요하면 열어 주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경매강

좌, 처음에 열 때 일부 부정적 의견도 있었어요. 왜 관공서에서 경매강좌까지 열어주느냐? 실제 하다보니까 작년에 4기 지금 2기 접수 중인데 조기 마감돼요 (양천구 팀장).

② 추진 사업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구민대학과 학관사업이다. 구민대학은 구마다 구민대학, 교양대학, 아카데미, 주민자치대학 등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방식의 강좌이다. 구에 따라서는 예산을 넉넉히 잡아 연속 강좌로 운영하며, 때론 1회로 운영하기도 한다. 구민대학은 직접 운영하는 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구민대학은 주민에게 인기가 많아 수강신청이 조기에 마감된다고 말한다. 수강비는 비교적 적은 편이며, 무료인 구가 많다. 수강비가 무료인데다가 외부강사로 유명인을 많이 초빙하고 있어 구로서는 강사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¹¹⁾

사례 8

근데 강사료가 진짜 좀 너무 많이 비싸요. 저희가 강사료를 자꾸 그렇게 비싸게 책정할 수가 없는데..... 그게 좀 힘든 점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개발 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점점 강사료가 올라가니까 개네도 너무 힘든가 봐요. 우리는 사실 계약금 자체가 작아서요(K구 팀원).

학관사업은 지역 내의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력과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학관사업은 조직이 작고 인력이 적은 구도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어 많이

11) 구민대학에 초빙하는 강사진은 대부분의 구가 비슷하며, 강사비는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구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구도 적지 않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는 특색사업을 대체로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와 강동구는 네트워크사업으로 생활권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북구는 신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네트워크사업 및 1도시 1특성화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학점은행제를 5개 강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자치구도 주민자치센터 거점화 사업 등 구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 또는 협력은 현장 밀착형 평생교육의 기반을 닦는 데 매우 기본적이고 필요한 요소이다.

① 행정 부서 간의 연계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는 평생교육팀만이 아니다. 자치구에서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 2~3년 전의 일이고, 아직 구성되지 않은 구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다른 부서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아직도 부서 업무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팀이 생기기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과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교육진흥과(교육정책과 등)¹²⁾가 만들어지면서 그 업무를 이관해 오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른 부서와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구가 있는 반면 많은 구가 연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선

12) 자치구마다 부서명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정되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구들에 해당된다. 이런 구들은 실무협의회를 자주 하여 다른 부서와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계와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포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등은 실무자 간 워크숍을 개최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조해 나가는 경우이다.

사례 9

4월 달에 우리가 1박2일로 워크숍을 가요. 4월 한 중순, 23일, 24일쯤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강남구 평생교육사).

사례 10

워크숍, 관내 기관담당자들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2월에. 네, 실무자들이요. 그런 거 하면서 서로 정보공유도 되고, 뭐가 필요한지, 기관에서 구에서 필요한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을. 전화로는 받기는 뭐하고 같이 하면서 토론을 하고 하니까요(마포구 팀장).

실무협의회나 워크숍을 이용한 조직적인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구도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서 담당자 간 협조를 하고 있다. 이 경우는 담당자가 개별적인 방법으로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례 11

도시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강좌들도 제가 다 엑셀로 정리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복지관, 종합복지관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들도 다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호환을 많이 해요. 문해교육 때문에 복지관을 들렀거든요. 서로 다 안면은 다 있고, 전화해서 바로바로 하죠(B구 팀원).

② 관련 기관과의 연계 · 협력

복지관, 문화관, 인력개발센터 등과의 연계 역시 선발 주자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에서 지역 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 밀착의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기관 간 연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진흥에 신경을 써 온 자치구들 역시 기관 간 네트워크를 추진 하였거나 추진 중인 경우가 많다. 관악구, 강남구, 강북구, 마포구, 강서구 등은 기관 간 연계를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수요자들의 접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있다.

사례 12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각개전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효율적인 것들은 좀 쳐나가면서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뭐 지금 단위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강남구 평생교육사).

사례 13

복지관, 시설, 지역기관들끼리 네트워크화해서 지역거점형식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강북구 팀장).

지역의 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는 구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에 지역 거점을 두어 권역 안 민·관의 기관들을 연계시켜 평생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례 14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축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 이거든요. 거점사업이고 하는데, 우리가 관내 평생교육기관들, 말하자면 각종 복지시설, 문화관, 도서관, 학교 전부 아울러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까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원하고 해줍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기관들로부터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로 교과부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건데, 교과부도 우수프로그램 등을 공모할 때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꽤 많이 타옵니다. 타온걸 가지고 우리가 관내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센터 내 건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거리상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관별, 거점별로, 복지관이고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고, 도서관, 학교 등에 우리가 프로그램 보급과 동시에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우리가 할 역할을 대신시키고 있어요. 일종의 위탁교실이 있고, 지원 파견 및 서비스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관악구 평생교육사).

③ 대학 및 교육청과 연계

각 자치구는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저마다 가지고 있다. 지역 내 대학과 협약을 맺어 연계를 하기도 하고, 대학이 구내에 없는 자치구의 경우는 인근의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들이 많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관학 사업이다.

사례 15

주로 연계사업을 하구요. 사이버대학교와 성신여대, 덕성여대가 있어 인프라는 좋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학관사업이 있어서요(D구 팀장).

관학 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인력과 자원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들이 많이 활용하는 사업이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와의 관학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영어 캠프를 한다든가, 구민대학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관악구 팀장은 이제 ‘마음을 연’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사례 16

서울대학교 쪽에 많이 매달리는 편이고, 그쪽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분들도 옛날에는 담장만 허물었었는데, 요즘은 마음의 벽까지도 많이 허물어가지고, 대화를 하면 예전 같으면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지금은 적극적이고, 교수님들이 나서 주시죠(관악구 팀장).

또한 공모사업에 자치구와 대학이 연계하여 응모하기도 한다.

한편, 자치구와 교육청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 담당자는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할 뿐이지 사업에서 서로 연계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례 17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물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업 논의 같은 것은 하겠지만 크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D구 팀장).

자치구와 교육청이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치구의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치구를 거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이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례 18

교육청은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교육청 가보면, 이번에 문해교육도 지역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신청하는 건데, 저희가 다 하고 거기서 한 것은 도장 한번 찍어 준 게 다예요. 진짜로 직인 한번 찍어 준 게 다예요(B구 팀원).

이처럼 자치구는 지역의 민간 기관과 연계하면서도 교육청과는 협의나 연계를 하지 않고 있다.

④ 연계 부족의 이유

평생교육을 둘러싸고 지역의 인적·물적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이유가 면담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부서 간 연계 부족은 자치구 단위가 아닌 중앙의 부처 간 연계 미흡에서 비롯된다. 중앙-서울시-자치구로 이어지는 수직 행정 라인에서, 각 단위의 부서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중앙에서 부처 간 연계가 적기 때문이다.

사례 19

서울시가 풀어줄 순 없어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도 연계가 안 되는데, 행정안전부도 안되고 노동부 예산에 직업교육이 얼마나 많이 잡혀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 예산을 갖다 못써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정부차원에서도 안 되는데 그런 게 문제성도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A구 평생교육사).

둘째, 부서 간 힘 차이에서 비롯한다. 평생교육 관련 주무부서와 다른 부서 간 권한과 권력의 차이는 협조와 연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사례 20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자치사업팀하고 협력을 해서 자치행정과가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총괄을 해요.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동에다 협력을 요청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교육지원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우습게 보는 거죠(F구 팀장).

셋째, 계획 단계에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서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과 연계 또는 협력이 필요하면 쉽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서 간 연계나 협력이 필요한 계획은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 데, 실제 자치구의 각 부서는 개별적으로 연간 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진 뒤에 부서 간 연계는 수월하지 않다.

기관 간 연계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관악구도 사전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전 논의 부족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한다.

사례 21

연간 계획수립하기 전부터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논의되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관의 정책이나 이런 흐름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수립하고 할 때부터 안 되는데 중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자는 건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예산이 고정되어있는 상태여서요.

넷째, 담당자가 빈번하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부서·기관 간 연계는 물적 연계 외에 그것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연계가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담당자로서 다른 부서의 담당자와 업무 관련한 연계 관계를 형성하면 관련 업무가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신입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빈번하여 담당자로서는 다시 연계

관계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순환보직을 자주 하는 행정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연계는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례 22

더더군다나 작년에 평생교육팀 한명도 안 남고 100% 교체가 됐어요. 나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나보다도 몰라요(F구 과장).

또한 다른 기관 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이미 구축해 놓은 정보망에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시키는 것조차 수월하지 않다.

사례 23

이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실무자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치센터나 다른 기관들이 굉장히 로테이션이 돼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전화하면 퇴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가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제가 받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모르는데요. 이러면 제가 다시 또 처음부터 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어서 정보를 업데이트시켜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예요(A구 평생교육사).

<사례 23>에서처럼,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기존에 이루어졌던 업무상 연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즉, 연계가 이루어져도 지속성이 부족하여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계가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가능하다.

부서 또는 기관 간 굳이 연계나 협력이 없어도 평생교육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성과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례 24

안되어 있다고 해도 각각 사업이 잘 되긴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A구 평생교육사).

(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① 예산 및 인력의 부족

각 자치구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보다 예산의 부족이다. 자치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면담조사한 자치구의 사정은 별반 차이가 없다.

2006년과 2007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는 국고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구 예산으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이 넉넉지 않다. 담당자들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적은 예산이 제약이 된다고 말한다.

사례 25

예산 문제가 가장 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뭔가 그럴듯한 것을 하려고 하는 데요(B구 팀원).

사례 26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많은 사업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제약이 따르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요(D구 팀장).

<사례 26>에서 나타나듯이, 지역 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복지 예산이 많은 자치구는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더 적으며, 관심에서도 후 순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극히 적다. 은평구도 구민대학 예산을 제외한 평생교육 예산은 몇 천만 원에 불과하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는 예산이 현재로선 다른 구에 비해 더 있을 수 있으나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사례 27

올해가 평생학습도시로 교육과학기술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G구 팀장).

예산이 넉넉하다는 구는 면담 조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그렇다고 담당자들이 무조건 많은 예산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들이 예산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인력의 배치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평생교육팀이 구성되고 업무가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특히, 평생교육 강좌를 직접 운영하는 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소수의 인원으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사례 28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요일까지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직원이 너무 혹사를 해요. 그렇다고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근무를 토요일로 하면 주중에 하루 쉬게 해줘야 하는데 인원이 3~4명 가지고 대체휴무하면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H구 과장).

인력이 부족하여 저녁 강좌나 주말 강좌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주말 강좌나 야간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구는 팀원이 저녁까지 남거나 주말에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아직 팀이 꾸려지지 않았거나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팀원이 팀장 포함 2~3명인 구는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구들은 위탁이나 공모 등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어 평생교육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된다.

사례 29

왜냐하면 인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직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직영을 하는 업무는 한계가 있다. 평생학습, 저기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머리를 좀 쓰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고경영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원래. 우리가 프로그램 아이템 등은 다 주구선 진행하는 건 거기서 하게(J구 팀장).

전문 인력의 부족도 평생교육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평생교육법(제 26조)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평생교육사가 없는 구도 많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는 대체로 평생교육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만, 신설팀이나 아직 그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구는 평생교육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사례 30

그 다음에 인력, 평생교육사가 있어서 큰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해야 하는데 아직 전문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저희들도 이제 막 시작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전문가가 있으면 더 잘 할 텐데 말이죠(D구 팀장).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큰 것은 무엇보다 평생교육 업무가 일반 행정직에게는 ‘낯선 업무’라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그간 자치단체가 교육 및 평생교육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직은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해 모른다. 설혹 약간 평생교육에 대해 알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철학이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달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숙달되어도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례 31

저희 행정직은 부서를 옮겨 다니더라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제가 느낀 게 평생교육전문직, 평생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처음에 행정직이 4명이 앉아있어서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평생교육사 한 명이 처음에 근무를 하는데 저희하고 기본 마인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행정업무를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이분들은 전문직이죠(F구 팀장).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생교육사를 한 명 채용하게 되면 일반 행정직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례 32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이 5명이다. 행정직 자리가 5명 있는데, 만약에 평생학습사 2명을 채용하면 행정은 3명으로 줄어든다. 근데 어차피 칼자루는 행정직이 쥐고 있잖아요. 그럼 안 뽑죠. 내 자리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죠. 그래서 평생교육사 정원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A구 팀장).

따라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기 쉽지 않다. 평생교육법 사항에 있는 수를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② 인프라 부족

시설·장소의 부족도 평생교육 강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다. 시설과 기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구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으나 그렇지 못한 구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설을 구비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없다.

장소 부족은 평생교육 강좌를 직영할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때 담당자들은 여러 부서에 전화해서 빈 강의실을 잡는 등 장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

사례 33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강의실이란 강의실은 다 철새마냥 다녀요(H구 팀장).

사례 34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영할 수 있고 관리가 좋은데 그런데 그런 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직영할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짐을 들고 옮겨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저희도 센터가 있으면 좀 더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할 수 있죠(K구 팀장).

이와 같이 시설이 없어 교육 장소가 부족한 구는 평생학습센터를 갖춘 구를 부러워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학습관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③ 추진 시스템 부재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 추진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시·도지사/시·도 교육감-시·군·자치구의 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에게는 아직 추진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35

지자체 정도 뭐 서울시, 지방 같은 경우 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가는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거 어떤 그 공동체가 없어요. 잡아줘 가지고 이끌어 가주는 힘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은 국회라든지, 국회에서 뭐 평생교육법을 개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실어줘 가지고

하나의 모체가 되어가지고 힘을 체계적으로 실어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대로 그 다음에 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부조직에서 혁신했던 식으로 해서 하나 딱 조직체가 형성이 되어서 힘 있는 게 배분을 해준다든지 실어주면 괜찮은데 지금 그러한 그 조직체도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미흡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선 무체계하다고 해야 할까, 우왕좌왕하는 쪽이 아니냐, 하나 모티브를 짚 잡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요. 제일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면 평생교육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떠한 그 사군구 통합을 해서 내려 보내줘서 조인시켜줘서 통일시켜 줘야하는데 그런 통일성이 없어요(K구 평생교육사).

④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에서의 곤란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는 평생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어떻게 기획하여 어떤 강좌를 개설하느냐, 그리고 이를 어떻게 평가 관리하느냐가 주민에게 다가서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관건이기 때문이다.

자치구 담당자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프로그램 개발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사가 없는 자치구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사례 36

저희 행정업무 담당 인력이 교육프로그램을 짜면 얼마나 더 거기 있는 전문가들보다 잘 짜겠어요. 거기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사도 있고 그렇거든요(B구 팀원).

프로그램 개발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자치구는 큰 열개만 만들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위탁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활용하기도 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나 지역 내 다른 기관 등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평생교육사가 없는 자치

구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평생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에서도 이루어진다.

사례 37

관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들이 구민들이 얼마만큼 특성화되거나, 관에서 민간에서 손을 안대는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짜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지 워낙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틈새나 기관에 차라리 지원을 좀 더 해줘서 요구하는 거를 주제를 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공모를 많이 하더라고요(F구 팀장).

한편,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할 때 교육 수요층을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수요층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려 해도 참여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층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꼭 필요한 소수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렵다.

사례 38

교육의 타깃을 잡는 게 좀 힘들어요. 모두 적은 분한테만 깊이 있는 교육을 하다 보면 다수에게 못하게 되고, 구청은 아무래도 많은 인원, 다수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다수한테 돌아가게 하려면 그렇게 할수록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A구 팀원).

또한 주민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서 빚어지는 어려움도 있다. 담당자들은 강좌를 개설할 때 공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민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구가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고 이럴 경우 예상치 않은 반발이 생기기도 한다.

사례 39

2년 넘게 하면서 신설강좌 요청을 하면 기준은 일반 사경제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빼고요. 그것은 가능하면 안 해요. 사경제영역부분, 제도권부분에서 다루는 것 제외해요. 특히 음악에 관계되는 부분의 강좌들은 사경제영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하고 있어요. 보습학원연합회에서 반발이 와요(H구 과장).

강좌 개설만이 아니라 강좌 폐지의 경우도 반발과 저항이 따른다. 이로 인해 이미 개설된 강좌는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사례 40

사실은 프로그램이 초창기에는 교육문화강좌로 됐다가, 점점 늘려가야 하는데 프로그램 하나 없애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프로그램 하나 없애면 주민들이 쫓아와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당장 저렴하고 질 좋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다른 학원에 안 보내고 여기 보내는 학부모들인데, 여기 모이는 학부모도 계시고, 프로그램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줄이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앞으로 사실 통합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들 저희가 운영을 하려거든요(A구 평생교육사).

H구의 경우 평생교육팀과 다른 부서들이 함께 논의하여 부서에서 운영하는 중복되는 평생교육 강좌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려고 했는데, 폐지에 대해 주민이 아닌 강사의 강력한 저항이 있어 결국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사례 41

수강생들이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양쪽기관 간에 활성화되고 인원이 충분하면 계속 하는데, 한쪽이 미달되고 미흡하면 한쪽은 폐지하자라는 취지로 진행했는데 이 취지 자체를 주민도 용

납을 안 하고, 우선 강사도 생존권의 문제로 구청장 면담도 요청을 하고요. 구청장이 관선일 때는 어느 정도 방향만 정해지만 진행했는데 민선이다 보니 표를 의식해야 하니까 구청장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 민원을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끌려가는 형태가 되고요.(중략)..... 전체 다 조사되어서 책자까지 만들고,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지 정했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학습을 총괄부서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교육지원과, 동사무소, 복지관에서 하든 결국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체계적으로 나눠서 분담을 하려고 짜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배후에는 강사들이 있었어요. 강사가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갔는데 여기가 없어지면 강의 장소가 줄어들으니까 입지도 줄어들고요(H구 과장).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 외에 강사 관리에서 어려움도 나타난다. 제대로 된 강사를 검증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증한다고 해도 강사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대부분 민간 자격증이어서 검증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강사에 대한 수강생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강사비가 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면담조사한 자치구 대부분이 구민대학 유형의 특강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좌는 주로 유명인을 강사로 초빙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꽤 많이 든다. 강좌를 듣는 구민에게 수강비를 받는 구도 있지만 여러 구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높아만 가는 강사비를 충당하기에 자치구로서는 부담이 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평생교육 예산을 한정없이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강사비 부담이 크게 다가온다.

⑤ 업무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

자치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은 평생교육진흥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

첫째, 평생교육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에 해 보지 않은 ‘낯선 업무’여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다. 특히, 평생교육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처음으

로 시작하던 때에 더 그렇게 느꼈다고 한다.

사례 42

2008년에 지정받고 국비도 받았는데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벤치마킹하려고 해도 여건이나 구별 구민들 수준이 틀리니까요. K구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접목할 수도 없고요.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힘들었어요(F구 팀장).

둘째, 담당자가 이전에 접해 보지 못한 업무여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담당자들은 팀에 배정받고 관련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려고 해도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말한다. 평생교육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으려 해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사례 43

지금까지는 정보공유 하는 게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는 그것 이외에는 바라는 것은 없고요(D구 팀장).

셋째,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평생교육팀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구민과 구청장 등의 관심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는 데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는 평생교육 업무가 새로운 업무라 성과를 이루기 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도 주변의 기대가 커 담당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례 44

구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처음 하는 거라 바로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

는 데 민선이다 보니까 뭔가 실적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실무자들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실제 시행착오도 거치고 한두 번 실수도 하고 틀이 잡혀져야 하는데 바로 지정받고 1년 동안 사업이 활발하게 너무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F구 팀장).

넷째, 평생교육에 대한 다른 부서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평생교육팀이 후발 부서인데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10여 년 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신설된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등 평생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수반되는 어려움이 크다.

사례 45

왜 같은 프로그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같은 프로그램을 또 하려고 하나 저희 사업을 봤을 때, 근데 저희 그 평생학습도시의 저희 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종합해주고 메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그 발전을 해 줄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되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걸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를,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새로운 주제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막상 해보면 주민들한테 반응은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거는. 이제 뭐 저희는 기초 노래교실이라든지 뭐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 주민자치센터나 그런데도 해야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 아닌 것은 저희 쪽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 사는 게 약간 힘들죠(I구 평생교육사).

한편, 평생교육사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일반 행정직의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애로가 따른다. 평생교육사는 3년 계약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일반 행정직은 길어야 2년 정도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큰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

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상대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평생교육사만큼 관련 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반된다.

사례 46

인수인계 작업이 있고, 어찌됐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만큼 평생교육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만 남고 다 이제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요. 어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죠(A구 평생교육사).

둘째, 일반 행정업무가 낯설어 이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해결된다.

사례 47

그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니까 와서 제 전문분야에 뭐 프로그램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 행정 그 계약하는 거부터 현수막 하나 사는 거부터해서 그런 거 배우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전문가니까 제 전문 분야를 해주고 이제 공무원들은 행정에 경력이 오래 되셨으니까 그런데 행정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평생교육사가 모든 행정까지 다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게 제일 어려웠고요(I구 평생교육사).

셋째, 평생교육에 대한 다른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기반을 닦기까지 어려움이 크다.

사례 48

그 다음에 처음에는 생소하신, 2006년만 해도 평생학습도시가 뭔지 아직 개념이 뭔지 그니까 제일 쉽게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요, 이러면 이제 거기 선까지 밖에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런 거만 하면 됐지 이거 왜 해야 하는 가 설득하는 과정이 어려웠죠(I구 평생교육사).

넷째, 처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평생교육사가 행정직의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5) 지역 평생교육의 성과와 한계

지역에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펴 온지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해를 기준으로 하면 6년 여가 되었다. 그동안 드러난 지역 평생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① 성과

자치구마다 예산, 시설, 인력 등 평생교육의 기반이 다르다. 일찍 추진하여 이미 기반이 닦인 구가 있는가 하면 아직 초보 단계인 구도 있어 면담조사 한 구 모두의 성과로 볼 수 없지만 그간 자치구들이 일궈온 성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전담 부서의 설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팀이 없는 자치구도 있지만 자치구에 꾸준히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진 결과 평생교육이 자치구의 업무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룬 큰 성과는 바로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일괄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례 49

전담부서가 생겨서 직접 운영하는 강사자도 생겼고,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곳곳에 퍼져서 있던 프로그램들을 한목에 정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도 되었고요(B구 팀원).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이전에 다른 부서에 있던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평생교육팀으로 이관되는 등의 성과도 생겼다. 강남구에서는 평생교육

팀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성과가 있었다.

사례 50

주민정보화교육도 이것도 원래 기획경영과에서 했어요. 컴퓨터 관련 부서인데서 하다가 근데 작년에 넘어왔어요. 우리 평생교육팀으로요(강남구 평생교육사).

다음으로 저변 확대 및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역 주민에게 생소하였던 평생교육에 대해 알리고 동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나아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이들을 참여하도록 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이다. 일반인에게 낯설었던 평생교육이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고 있는 것이다.

사례 51

주민들이 진짜 초창기에는 전혀 모르셨어요, 저희가 그 평생학습도시도 모르시고 했는데 인식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신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해 주는구나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셨고요. 눈에 띄는, 이게 그러니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경제 뭐 그런 것처럼 띄는 것은 없지만 프로그램 하고 그 분들, 수강생들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피드백 뭐 그런 건 있어요(J구 평생교육사).

사례 52

학습기반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사실 수강생 모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수강생들이 홈페이지 자주 오셔서 미리 보고가시고요. 홈페이지 보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교육한다 하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오시고 저희가 또 최고지도자 과정을 5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사실 500명 넘을까 싶었는데 넘었어요. 야간강좌고(K구 팀장).

또한 지역의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네트워크 구축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서 중요시 하는 사업이며, 지역에 평생교육이 착근할 수 있는 중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들에서 이루어 낸 성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구축하여 권역 안의 기관 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의 평생학습팀이나 평생학습센터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 도서관, 여성능력개발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네트워킹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서구도 지역 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평생교육 관련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수월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례 53

기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향상되었다는 것, 중앙에는 저희 팀이 있고, 복지관이나 도서관 뭐, 공모사업이나 뭐 여러 다른 공모사업 하면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자주 인제 연락도 많이 한다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트워킹이.

일 하기가 정말 수월하죠. 작은 부탁 하나도 서로 소홀하지 않고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부를 쌓고 두 기관 연결해주고, 또 이렇게 조정을 저희가 해줘야 네트워킹이 되죠. 처음에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3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쉬워졌죠, 이제 사업하는데서요(강서구 평생교육사).

이외에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관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와 대학의 연계가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또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고려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사례 54

인문학 강좌는 지금 계획이 지금까지 3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던 것을 영역을 16개 동 중 50%인 8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만의 노력으로 는 안 되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관할하는 과가 있어요. 거기랑 같이 협의 해서, 오늘 오전에도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어차피 주민 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니까 거점을 그쪽으로 설정하는 게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문학 강좌를 주민대학은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인문학 강좌 아니면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이거는 작년 2월에 일본에 야시오시 벤치마킹 갔다가 거기서 하는 것을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F구 팀장).

이와 같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즉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데 진일보한 성과를 얻고 있다.

② 한계

앞서 제시한 평생교육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가 표출되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한계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강좌나 프로그램에 특정 계층이 많이 참여하면서 특정의 수혜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자치구로서는 평생교육 강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길 바라지만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편이다.

사례 55

특정구민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게 되니까, 구민들의 세금가지고 운영되는데 받는 계층은 계속 혜택을 주니까요. 새로운 계층을,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골고루라는 것도 본인들이 들으러 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죠(F구 평생교육사).

자치구의 담당자는 시간이 넉넉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평생교육 강좌를 많이 수강한다고 말한다. 주로 낮 시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담당자들은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사례 56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비용내기 힘든 사람들 위주로 하고 싶은데, 건강관련 프로그램들은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고, 계속 또 등록 또 등록하고 해요. 또 타깃을 저소득층으로 맞춘 것은 그 사람들은 참석을 못하고, 참석할 만한 시간이 없는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H구 과장).

사례 57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장애인도 많다 보니까 참여가 힘들지만 전혀 안 오는 건 아니예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오기는 하죠. 저소득층, 기초생활대상자는 해줘요, 그 중에서 해주는데 그들 중 10명 중 1명이 정상이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보면 되죠(I구 팀장).

사례 58

센터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보면 매일 정해져 있어요, 참여하는 강좌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00에 가서 노래교실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빨간 길로 동그라미 해놓을 거고, 그러면 또 복지관에 가서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해요.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L구 팀장).

수강 계층을 저소득층 맞춤형으로 운영하더라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바쁜 이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 특히 직업능력개발 관련 강좌도 듣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강좌가 개설되는 시설과 장소가 소외 계층에

게 근접해 있지 않아 더욱 어려움이 수반된다.

사례 59

팀 장: 자격증부분은 조금만 하고 있는데, 사이버 평생학습 센터라고 사이버에 66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직업문화로 다루고 있는데 자격증 프로그램을 넣은 이유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소득이랑 연관이 되더라. 결국 답습이 되다 보니까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연구자: 수강률이 낮은가 보네요.

팀 장: 오히려 00동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쪽 사람들은 교육받을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장소가 그쪽에서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은 강의를 하는데 일요일은 쉬자 해서 안 하고 있어요(H구).

이와 같이 특정 계층에게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게 현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평생교육 사업이나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정작 그 대상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이다.

사례 60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공공성을, 평생학습을 공공성을 가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제 혜택을 봐야 하는 분들은 안 오시니까요(I구 팀장).

공공의 정책은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다수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뛰어난 주민이나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운영 과정상의 한계로 담당자들은 딜레마 상황에 놓인다.

사례 61

평생교육을 마냥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요. 확대하면 할수록 예산이 추가되고, 안 하면 과 존속문제가 있고,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진전돼서 나갈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마냥 벌려나갈 생각은 없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보조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요(H구 팀장).

또한 평생교육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평생교육의 확산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주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한 사람들로 국한된 채 확산되지 않고 있다. 구의 담당자들은 많은 주민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말하듯 “그들만의 리그”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 62

또 다른 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는 구나 시,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있어요. 평생학습자체가요(F구 팀장).

구에서는 다수 주민의 참여로 평생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때론 일간지 광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다수의 구민이 두루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례 63

지난 1기도 그렇고 2기도 홍보가 좀 잘돼서 일찍 마감이 됐어요. 얼마든지 보도매체를 이용하면 이번엔 2기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 공고가 났었어요. 기사가 났더니 중앙일간지의 위력이 대단한지 일간지에 나면은 수강생 모집이 평

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 외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
고요(I구 팀장).

면담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 구민대학, 아카데미 또는 특강 등의 강좌는
주민 참여가 잘 되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
자들이 고심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
해 가고 있는 자치구는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홍보
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
는 구는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주민의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치구의 한 담당자는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자
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5~6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확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구
들이 주민 다수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2)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개선 및 요구 사항

(1)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 중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한 곳이 여럿
있다. 지역 내 교육 자원을 연결하여 그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변종임, 2006:250-251). 지역의 시설, 기관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지역에서의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
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은 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64

양질화, 네트워크 전략을 짜는 것을 해야 한다. 이미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양질화시키는 것을 해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기관을 연계하
는 네트워크 말이다(G구 팀장).

자치구의 담당자들은 서울시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인근의 몇 개 구를 묶어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가 이를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례 65

네트워킹, 권역별로 묶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컨대, 서초, 강남, 송파라도 묶어야 해요(C구 평생교육사).

(2)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담당자들은 서울시 종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 개설 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망을 앞으로는 서울시가 총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66

통합해서 구별로 정보를,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주 없죠, 지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 같고요(E구 팀원).

또 담당자들은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을 모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길 바라는 것이다.

(3) 자치구 지원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

자치구 담당자들은 서울시가 직접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자치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을 한결같은 목소리로 요구한다.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기 쉽고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쉬운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서울시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례 67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키워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서울시가 ‘뭔가 사업을 하겠다.’ 쪽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자치단체하고 경쟁하는 입장밖에 안돼요(A구 평생교육사).

사례 68

서울시가 직접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까지는 없고요(B구 팀원).

사례 69

단위사업은 하지 말고, 독려사업, 정책사업만 해야죠(G구 팀장).

자치구의 담당자들은 서울시는 자치구와 달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자치구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4) 자치구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 줘야 할 역할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구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지만 자치구를 넘어서는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면담조사 결과, 담당자들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 곳을 제외하고 다수의 자치구들은 평생교육 시설을 지을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청이 많다. 평

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을 짓는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치구에서는 수강층이 적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에 제약이 따르므로, 서울시에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등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례 70

서울시에서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무슨 사항 이런데서 돌아가면서 구별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인문학 강좌 같은 건 사실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어려운데 뭐 그런 거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아직 뭐랄까요(K구 평생교육사).

자치구의 담당자들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다. 수요조사는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나 자치구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례 71

구민들 수요조사 부분 등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F구 팀장).

사례 72

욕구조사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교육으로 해서 해온 거 아닌 거 아닌가? 아닐 수 있겠지만 제 느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욕구를 일단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E구 팀원).

또한 자치구 간 중복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치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많은 사이버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이버 강좌는 특성상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이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거나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치구 차원이 아닌 시 차원에서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자치구마다 중복 운영하는 것 자체를 예산의 낭비로 보는 것이다.

사례 73

사이버 평생학습 사이버 교육강좌를 자치구마다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25×25 하면 엄청난 예산이 쓰이잖아요. 시에서 한꺼번에 구축을 해서 각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전체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요(F구 평생교육사).

사례 74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그 사이버학습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구별로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별로 다 사업비가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걸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홈페이지에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구별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거하고요(K구 팀장).

(5) 평생교육 연수 및 컨설팅 실시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새로운 업무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막막해한다. 평생교육사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선수 지식 및 네트워크가 있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으로서 평생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은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며, 정보도 없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지 업무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나마 평생교육팀이 만들어지고 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 시작되어 체계를 잡아 가고 있는 자치구의 담당자들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업무를 익혀 나가지만, 팀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담당자도 적은 자치구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다.

다음 사례는 팀도 없고 담당자도 한 명뿐인 자치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의 답답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

사례 75

평생교육을 제가 맡고 있기는 한데 당장 급한 것은 없고 저 혼자서 이것저것 해 나갈 수는 없고 기본계획조차 수립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 제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전조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국회도서관 자료를 찾는다니. 그런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실무가 급한 상태인데, 제가 어느 정도 틀은 이해를 했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생교육팀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M구 담당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업무 담당자들은 연수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장의 업무는 다른 구의 홈페이지를 보고 담당자들에게 물어 해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연수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76

실무자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시키는 것을 해야 해요. 연1, 2회 정도 연수를 해 줘야 해요(G구 팀장).

사례 77

서울시 구마다 각 담당들끼리 연수를 다, 간담회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평생학습도시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간담회도 자주하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정보 같은 것을 교류하면서 그런데 다른 비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거든요.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들은 좀 많이 자리 같은 걸 마련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K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은 평생교육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전문가를 배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반 행정직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와 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당장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커뮤니티를 개설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연수와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담당하여도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자치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례 78

저희 구는 평생교육사도 없는 곳이라,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드니까 컨설팅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이 좀 효과가 있게, 효력이 있게, 어느 정도 구한테 강제력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B구 팀원).

사례 79

컨설팅이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다른 구에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 말고 중앙적인 것이 없다는 게 문제였으니까 서울시의 역할이 그 부분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요(F구 평생교육사).

자치구도 나름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6) 기타

서울시가 해야 할 일로서 제시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사업 관련 개선이다. 담당자들은 2009년 평생교육사업담당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바란다. 공모사업의 절차가 까다롭고 자치구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자율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례 80

이번에 공모사업하면서 불편했던 게 너무 까다롭게 공모사업서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내용도 바뀌고 그랬어요. 공모사업이, 자치구 입장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까다롭게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되게 좀 하다 보면, 번거로운, 돈 내서 하는 게, 간소화해줬으면 좋겠고요(B구 팀원).

사례 81

너무 움츠러들게 하니까요.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으면 사업들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필드에 있는 복지관이나 대학들 이런 곳들이고, 저희는 중간에서의 역할이니까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죠(D구 팀장).

자치구의 업무 담당자들은 공모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공모가 아닌 지원 사업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

사례 82

서울시 공모사업도 문제가 많아요. 선정된 곳은 주고 안 된 곳은 안주면 안 된 곳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시가 큰 틀의 단위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던가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 해요. 공모사업도 일정하게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하죠(G구 팀장).

담당자들은 공모 사업은 자치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까지 나서서 공모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자치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중복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사례 83

어떻게 여기 분야라도 좀 나섰으면, 차별화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서울시 공모한 거 보니까 똑같더라고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업을 해줬으면 서울시에서요(K구 평생교육사).

둘째, 서울시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인식을 확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례 84

우리도 시에서 평생학습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보도 자료를 보더라도 시에서 보도 자료 보내는 게 더 효과가 클 거니까요. 홍보에 좀, 주민들한테 구별로, 우리 구만 하더라도 우리 구별로 평생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홍보를 좀, 홍보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B구 팀원).

셋째,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동일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단위 자치구에서 수행할 수 없는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례 85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우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중략).....
공모전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다른 형태로, 그리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구는 팬찮지만 열악한 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중앙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F구 18).

사례 86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 학교에 우리가 몇 천 만원 씩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서울시에서 해줘야죠 그런 광역적인 것, 큰 것. 우리가 소소한 것은 할 수 있지만은 큰 사업은 못 하죠.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하죠(I구 팀장).

사례 87

사실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움직인다기보다 좀 더 큰 단위에서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C구 평생교육사).

이 외에도 서울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여 제공하거나 서울시의 평생교육 전담 행정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하였다.

제2절 개선요구 분석

1.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 델파이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델파이 방법은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이다(이종성, 2001: 7). 이 방법은 추정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둘러싼 상황이 새로이 변했기 때문에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2) 조사 절차

먼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 전문가 리스트를 만드는 일부부터 시작하였다. 전문가 리스트는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학 및 평생교육진흥원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오래도록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최근에 평생교육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를 주된 선정 기준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2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리스트가 만들어진 뒤, 델파이 조사를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20명의 전문가에서 이메일로 델파이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1차 조사의 1차 종료 기간이 지난 후에 응답하지 않은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인 전화 연락을 통해 다시 한 번 델파이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15명이 답변을 주었다.

개방형 질문의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에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의견 정도를 0점에서 7점까지 묻는 문항과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 때 1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참고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조사는 처음에 선정된 전문가 20명 중 1차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2차 조사 역시 선택형으로 구성한 조사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받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선택형이므로 1차 조사보다는 조사 마감 시간을 짧게 하였다. 1차 마감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전문가들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회수하였다. 2차 조사 결과 15명 모두 응답하였다.

(3) 조사 기간 및 회수

1차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09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회수율은 20명 중 15명이 응답하여 75%이다. 2차 델파이 조사는 2009년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율은 15명 모두 응답하여 100%이다.

〈표 4-2〉 델파이 조사 기간 및 회수율

조사 구분	조사 기간	회수(회수율)
델파이 조사 1차	2009. 3. 20 ~ 4. 6	15(75%)
델파이 조사 2차	2009. 4. 21 ~ 4. 29	15(100%)

(4) 조사 내용

1차 델파이 조사 내용은 2가지로 구성하였다(델파이 조사지는 <부록 3> 참조). 첫째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서울시가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둘째는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을 진작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해 오고 있는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이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한 내용이다. 1차 조사 결과 중 법정 과제인 평생학습시행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정,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 주제이며, 구체적인 조사 문항은 <표 4-3>과 같다.

〈표 4-3〉 2차 델파이 조사 내용

주제	조사 내용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과 연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	•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실시 • 자치구 간 격차 완화 지원 •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체제 구축 • 평생교육 업무자의 연수와 역량개발 • 실무자 협력망 구축 • 자치구에 컨설팅 제공 • 자치구의 평생교육 평가 • 자치구와 공동사업 발굴 지원 •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 시설 설립 지원

2) 델파이 조사 결과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

델파이 1차 조사에서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책무가 생긴 서울시가 앞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여 나온 항목은 12가지였다. ‘서울시 평생교육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평생교육 조례 제정’,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평생교육 관련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이 그것들이다(<표 4-4>참조).

〈표 4-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향후 서울시의 추진 과제(1차 응답 결과)

응답 내용	응답자(명)
서울시 평생교육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10
평생교육 조례 제정	4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7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4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	12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5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5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4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4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4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3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2

기타로 ‘청소년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인프라 조성’, ‘평생교육을 통해 일류시민 계몽운동을 전개’ 등의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한 항목 중 ‘서울시 평생교육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평생교육 조례 제정’,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법령 사항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서 필요 정도를 7점 연속변수로 하여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5> 참조).

첫째,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 정도는 7점 중 6.23점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는 5.92점으로 비교적 높아, 앞으로 서울시가 정규교육과정 외에 평생교육에서조차 참여 기회가 많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 관련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은 6.61점으로 높아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전문가는 서울시가 서둘러 평생교육 전담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는 5.35점으로 비교적 높아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보였다.

다섯째,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는 4.82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간점수 이상으로 이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은 4.84점으로 다소 낮지만 중간 점수보다 높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은 5.37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여덟째,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은 5.4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과제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표 4-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향후 서울시의 추진 과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 분	평균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	6.23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5.92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6.61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5.35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4.82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4.84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5.37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5.49

또한 서울시가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기입하도록 한 결과,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에 6명이 응답하여 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이 26.7%,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가 각각 13.3%,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가 6.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순위결과는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평생교육 관련 전담조직 등 체계를 갖춰,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수립

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방형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유사하나, 1차 조사에서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던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든 2순위 결과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이 4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는 20%로 나타났다. 역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표 4-6〉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추진 과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	2	13,3	6	40,0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2	13,3	1	6,7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6	40,0	1	6,7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1	6,7	1	6,7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0	0,0	3	20,0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0	0,0	1	6,7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0	0,0	1	6,7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4	26,7	1	6,7
전체	15	100,0	15	100,0

(2) 자치구와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이미 평생교육을 활발히 추진하는 자치구들이 상당수 있고, 아직 조직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치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자치

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제시된 의견의 내용은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예: 평생학습관)’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4-7>참조).

〈표 4-7〉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1차 응답 내용)

응답 내용	응답자(명)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3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2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3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3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3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	2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3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3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1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2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1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예: 평생학습관)	1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한 항목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필요 정도를 점수로 기재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8> 참조).

첫째,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이 7점 중 5.17점으로 비교적 높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은 4.57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으나, 평균보다 높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는 5.59점으로 비교적 높아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넷째,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는 5.52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은 5.97점으로 가장 높아, 평생교육에서의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 또는 지원을 서울시가 해야 할 중요 역할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도 4.57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필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일곱째,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은 5.43점으로 비교적 높아 전문가들은 통합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덟째,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개발 및 연수 실시’도 5.77점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평생교육을 추진할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도 5.63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담당자들의 업무 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열 번째,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은 4.57점으로 평균보다 높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는 4.83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의견을 보였다.

열두 번째,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은 4.5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평균보다 높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세 번째,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은 4.32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여 주고 있으나, 다른 문항에 비해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문항	평균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5.17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4.57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5.59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5.52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5.97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4.57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	5.43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5.77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5.63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4.57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4.83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4.59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예: 평생학습관)	4.32

다음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응답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이 각각 26.7%

로 나타나 가장 많은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 응답에서는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자치구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개발 및 연수 실시’,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이 각각 13.3%로 나타나, 수렴되는 항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 응답에서는 ‘자치구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이 각각 20.0%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결과로 볼 때,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것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구 차원에서보다 광역차원인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9〉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우선순위)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4	26.7	1	6.7	1	6.7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1	6.7	0	0.0	0	0.0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	2	13.3	2	13.3	1	6.7
자치구 추진사업에 지원 및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 실시	0	0.0	2	13.3	1	6.7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 완화 지원	2	13.3	2	13.3	3	20.0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0	0.0	1	6.7	0	0.0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	4	26.7	0	0.0	2	13.3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0	0.0	2	13.3	0	0.0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1	6.7	1	6.7	3	20.0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0	0.0	0	0.0	1	6.7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0	0.0	1	6.7	1	6.7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1	6.7	0	0.0	0	0.0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	0	0.0	2	13.3	2	13.3
무응답	0	0.0	1	6.7	0	0.0
전체	15	100.0	15	100.0	15	100.0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서울시 본청의 평생교육담당관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자를 포함하여 25개 자치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청의 10명을 포함하여 총 114명이 설문조사 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의 담당자 전자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미리 웹에 구축하여 응답자가 전자 메일을 통해 공지된 웹 주소에서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2차 델파이 조사 내용과 같게 구성하였다(설문지는 <부록 4> 참조). 설문조사는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회수율은 총 114명 중 75명이 응답하여 67.5%이다.

(2) 설문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 중 본청 근무자는 7.6%이며, 나머지 92.4%는 구청 근무자이다. 응답자 중 평생교육사는 18명으로 전체의 23.4%이며, 일반 행정직 응답자는 59명으로 76.6%이다. 구체적인 응답자 특성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설문 응답자 특성

배경변인		명(%)	배경변인		명(%)
성별	남자	32(41.6)	근무처	도심권	5(6.5)
	여자	45(57.4)		동북권	21(27.3)
나이	20대	13(16.8)		서북권	10(12.9)
	30대	26(33.8)		서남권	23(29.9)
	40대	22(28.6)		동남권	12(15.6)
	50대	16(20.8)		서울시청	6(7.6)
평생교육사 여부	평생교육사	18(23.4)	전체		77(67.5%)
	일반 행정직	59(76.6)			

(3) 분석 방법

분석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구축된 응답 자료를 연구자가 종합·정리하고, SPSS 12.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기술 분석, 다중응답분석, 차이검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1)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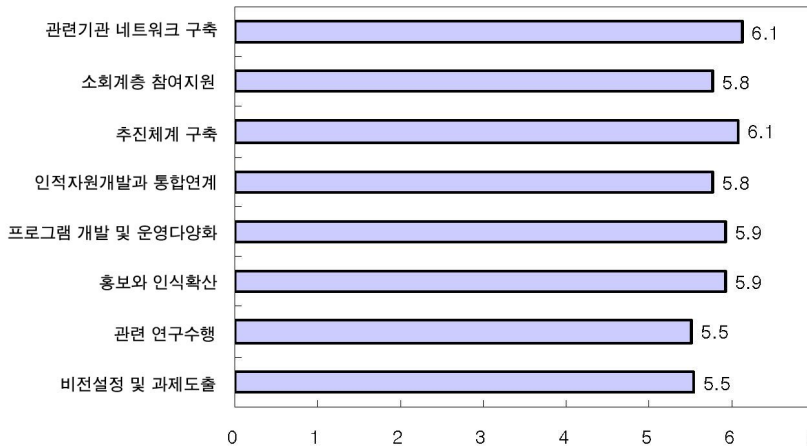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8개 문항을 구성해 그 필요 정도를 7점 연속변수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7점 중 6.1점으로 아주 높게 나타나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강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③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 ④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에 대해서는 5.8점으로 나타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⑤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5.9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⑥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에 대해서는 역시 5.9점으로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서울시가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⑦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5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⑧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도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5.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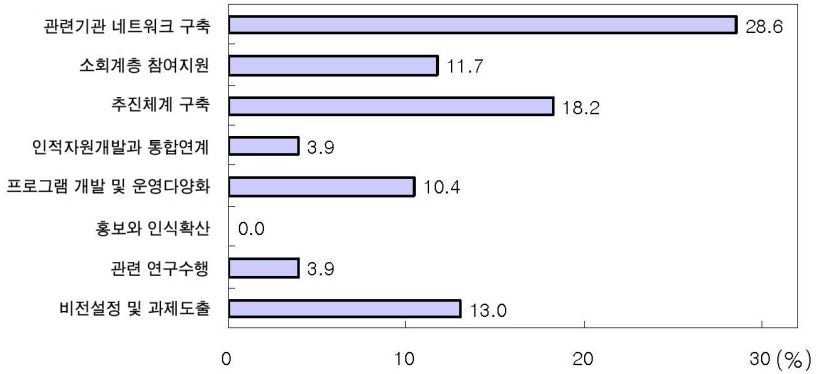


〈그림 4-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향후 서울시의 추진 과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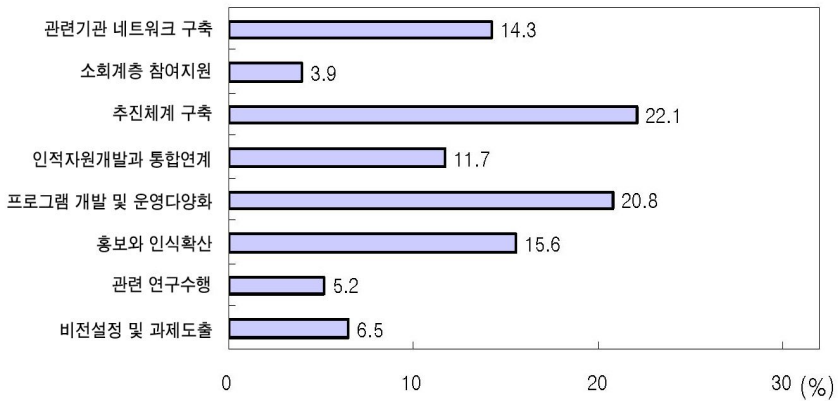
1순위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평생교육 전담 행정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18.2%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 및 과제 도출’이 13.0%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조사 결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은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 간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서울시의 추진 과제(1순위)

2순위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전담 행정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22.1%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주제·계층·지역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가 20.8%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서울시의 추진 과제(2순위)

(2)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모두 서울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역할에 있어 자치구와 차이를 가져야 한다.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의견에서 문항을 추출하여 개발한 2차 델파이 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평생교육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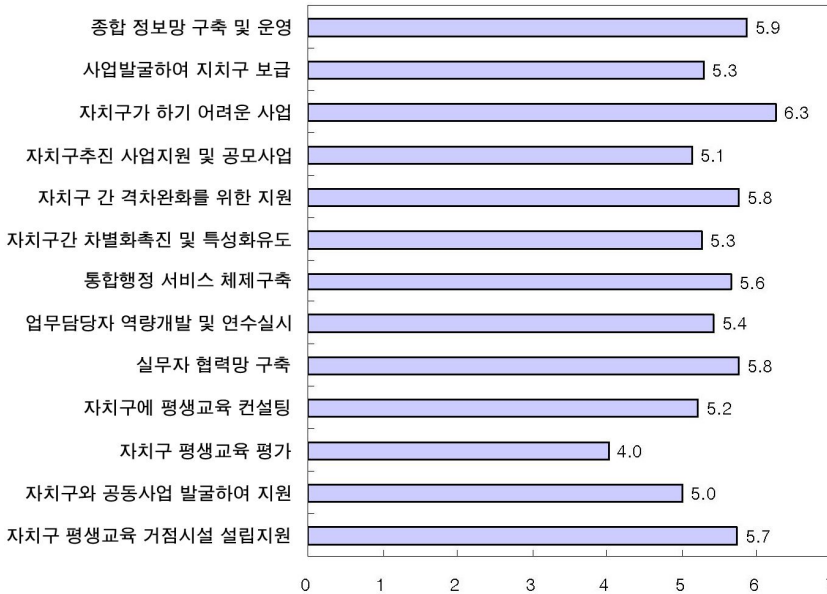
- ①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에 대해 평균 5.9점으로 나타나, 업무 담당자들은 서울시가 종합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 ②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에 대한 조사결과는 5.3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③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DB구축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6.3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담당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담당자들이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는 5.1점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점수를 넘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면담조사에서 자치구의 담당자들이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도 닿아 있다.
- ⑤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5.8점으로 나타나, 재정 자립도 등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서울시 상황에서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⑥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5.3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담당자들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나름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구 간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⑦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에 대한 조사결과는 5.6점으로, 매우 높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이 현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가 통합 행정체제의 구축으로 통합되어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⑧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개발 및 연수 실시’에 대해서는 5.4점으로 조사되었다. 면담조사에서도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이 낮은 업무에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연수나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서울시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 ⑨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은 5.8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담당자의 연수 못지않게 당장의 실무를 해 나가는 담당자로서는 관련 기관 간 실무자들끼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높은 의견을 보이는 것이다.
- ⑩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에 대해서는 평균 5.2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의견을 보인다. 자치구에 평생교육 관련 컨설팅 제공은 면담조사에서도 현장 실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담당자들이 컨설팅이 비교적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⑪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4.0점으로 중간점수인 3.5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부분의 평가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 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⑫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5.0점으로 나와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⑬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지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는 5.7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현재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시설이 많지 않은 자치구들이 이들 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 등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많은 의견을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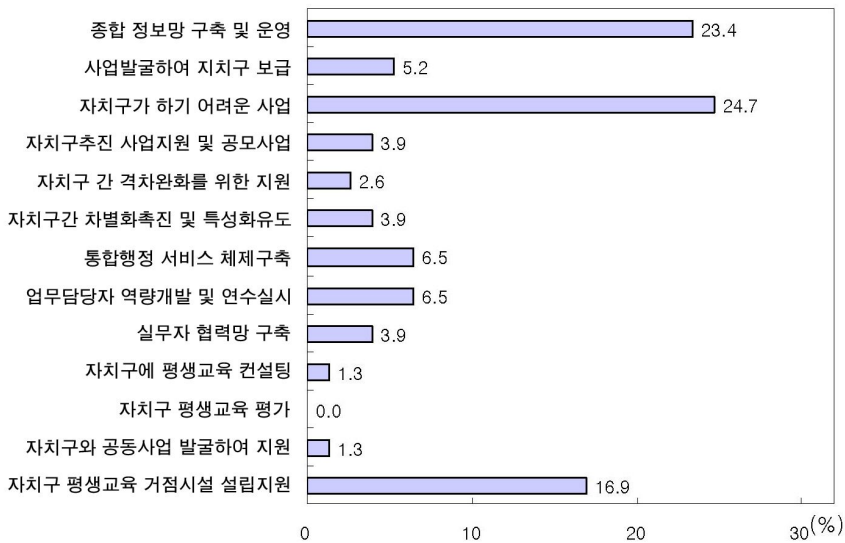


〈그림 4-4〉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13개 문항에 대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우선순위로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순위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자치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24.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이 23.4%,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지원’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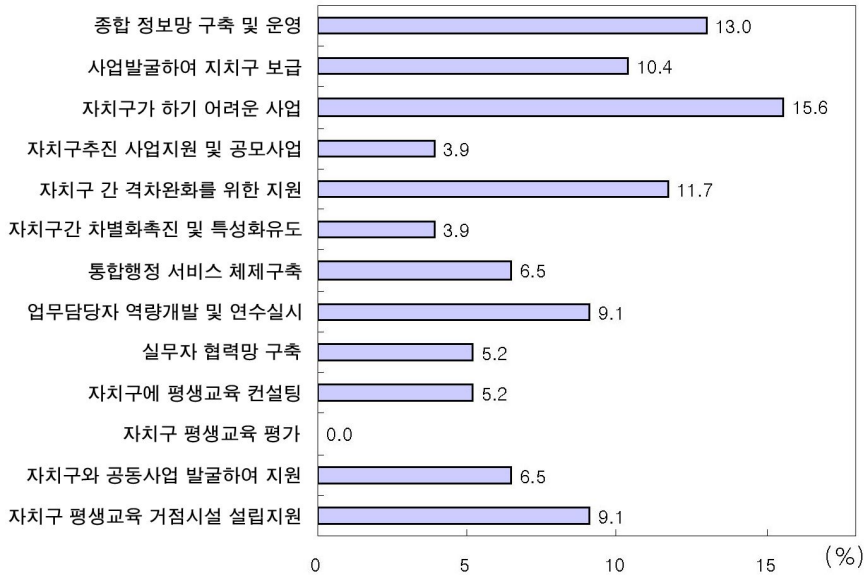
1순위 응답 결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은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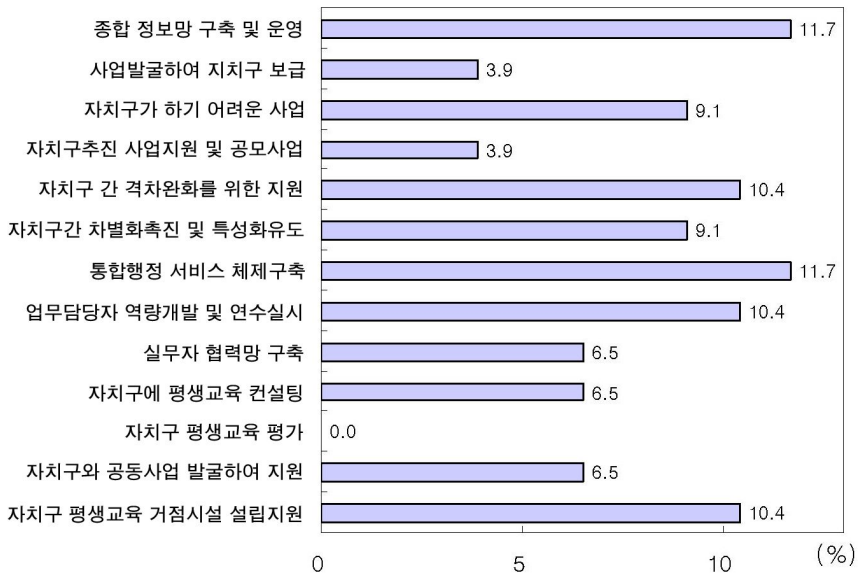
〈그림 4-5〉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 역할(1순위)

둘째, 2순위 응답에서는 ‘자치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15.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이 13.0%, ‘자치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10.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6> 참조).

셋째, 3순위 응답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과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이 각각 11.7%,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개발 및 연수실시’, ‘자치구 평생교육거점시설 설립지원’이 각각 10.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7> 참조).



〈그림 4-6〉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 역할(2순위)



〈그림 4-7〉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 역할(3순위)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면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치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많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강사 섭외부터 프로그램 관리까지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취미 위주의 강좌를 많이 운영하며, 때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학 강좌도 개설하는 추세이다. 자치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구민대학 운영과 학관사업이다. 이는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자치구마다 생활권역 사업 등 특색사업을 추진하나, 주력 사업은 앞서 제시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들은 다른 부서와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면담조사한 많은 구들의 경우 아직 연계와 협력은 초보 단계이다.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치구들은 복지관, 문화관 등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아직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 단계인 구는 연계와 협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자치구가 대학과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대학과 연계와 협력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와 교육청과의 협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자치구 담당자들은 어려운 교육청과 기꺼이 나서서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꺼려한다.

부서 간 연계도 쉽지 않은데, 이는 중앙에서의 부처 간 연계 미비, 부서 간 힘의 차이, 계획 단계부터 연계 미비, 담당자의 잦은 이동 및 교체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은 예산과 인력 부족, 시설, 장소 등 인프라의 부족, 추진 시스템의 부재, 프로그램 개발과 제

반 관리에서 애로 등이다. 또한 업무 담당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일반 행정직의 경우 평생교육이 ‘낮선 업무’인데다 정보가 부족한데서 오며, 평생교육사의 경우는 일반 행정업무가 낯설어 익히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 행정직의 잦은 이동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운 데서 비롯한다.

넷째, 지역의 평생교육 성과로는 그 동안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평생교육 진흥을 추진해 왔다는 점,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과 연계하여 관학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이들의 참여를 끌어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특정 층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과 평생교육의 확산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섯째, 서울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개선 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자치구 지원을 우선하는 정책의 수립, 자치구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의 추진, 담당자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연수와 교육, 구에 평생교육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공모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자치구 담당자들의 개선 의견과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인식 확산에 노력해 줄 것, 자치구별 특색사업을 지원해 줄 것, 그리고 광역 고유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해야 할 과제로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6.2점,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가 5.9점, ‘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6.6점,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가 5.4점,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가 4.8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이 4.8점,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이 5.4점,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과 과제 도출'이 5.5점으로 나왔다.

이에 대한 각 문항 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40.0%로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이 5.2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이 4.6점,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가 5.6점,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가 5.5점,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6.0점이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이 5.4점,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개발 및 연수 실시'가 5.8점,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은 5.6점,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은 4.6점,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가 4.8점,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은 4.6점,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예: 평생학습관)'은 4.3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과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이 각각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해야 할 과제로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6.1점,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가 5.8점, '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6.1점,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가 5.8점, '지역·계층·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가 5.9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이 5.9점,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이 5.5점,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과 과제 도출'이 5.5점으로 조사되었다.

각 문항 간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 응답에서는 '평생교육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이 5.9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이 5.3점,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가 6.3점,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는 5.1점,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5.8점,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은 5.6점이었다. 또한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개발 및 연수 실시'는 5.4점,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이 5.8점,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이 5.2점,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가 4.0점,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이 5.0점,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예: 평생학습관)'이 5.7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예: 자치구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도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 응답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과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이 각각 11.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평생교육 운영 실태와 요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또는 관련 부서 간 연계와 협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 지역 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있는 시설과 자원을 잘 활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서 간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부서 간 연계를 활성화하거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팀의 업무 및 기능을 개편 또는 확대할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설 및 장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인 일반 행정직이나 평생교육사 모두 낮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반 행정직의 잦은 이동으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의 주 수요자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한계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혜 층에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암시한다.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에서 계층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면담조사, 델파이조사,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주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네트워크 구축, 정보망 구축이라는 점은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을 뜻한다.

제5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제1절 운영 개선 방안

제2절 정책 제언

제5장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제1절 운영 개선 방안

1. 지원체제 구축

1) 평생교육 전담 조직의 기능 강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담당관으로 전담조직을 구비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생교육을 전담하여 추진할 조직 및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자치구의 평생교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선결되어야 한다. 현재 과인 조직을 장기적으로는 국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다른 부서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특히 평생직업능력개발 업무를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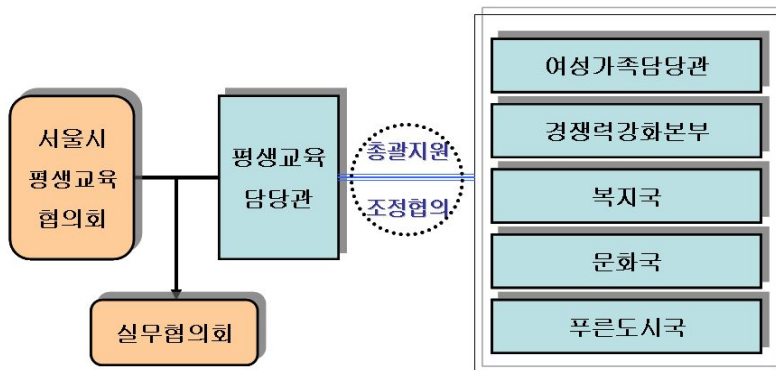
여기서는 단기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현재의 평생교육담당관을 서울시의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성격의 업무를 파악하여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는 이관하여 추진하고, 유관 업무는 평생교육담당관이 총괄하여 부서 간 중복 등으로 인

한 비효율과 효과 저하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담당관이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유관 업무 수행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의 국장이 참여하긴 하지만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이 대체로 평생교육담당관에서 추진되는 협의사항인 것을 감안하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와 사업에 대한 협의와 조정 기능은 미약할 것이다.

다른 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 추진 시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과 사전 협의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담당관이 서울시 부서 간의 중복 방지 및 전반적인 서울시 평생교육의 계획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가 평생교육담당관과 관련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수준만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회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평생교육담당관이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평생교육담당관의 총괄 기능

2) 평생교육 추진기구의 설립

(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추진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평생교육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자치구 평생학습관과 연계해 서울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해 나갈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다음의 3가지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다.

둘째, 지역 내 평생학습시설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안이다.

셋째, 한시적 위탁 후 설립하는 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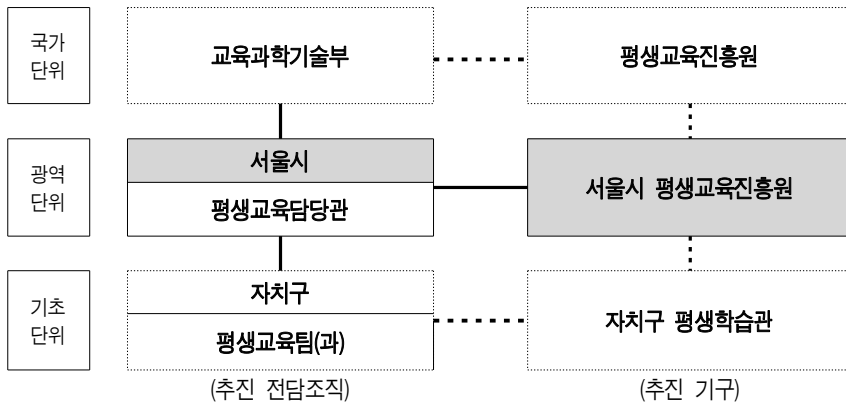
위탁을 하는 방안은 위탁 기관의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평생교육법 개정 전에 있던 시·도평생교육정보센터인 서울시 평생교육정보센터가 마포 도서관에 2009년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별도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시·도 평생교육정보센터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안 중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평생교육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하여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조속히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서울시가 평생교육을 조기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전담조직에 평생교육 전문가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박사 및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전문

가를 채용하여 서울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광역단위에서 중앙과 자치구를 연결하여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구를 구축하여 지역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첩경이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서울시 평생교육 지원체계

(2)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평생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제대로 가동·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 평생교육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따라 평생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관련자들의 교육과 연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현재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이 맡고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의 요구를 반영하고, 자치구의 평생교육진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주민이 실생활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호흡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단체, 시설, 사업, 인력의 네트워킹
 - － 정보의 네트워킹 구축
-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 평생교육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에 보급
 - －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계층·지역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정책 개발 및 조사
 - － 평생교육 정책 개발
 - － 평생교육 관련 기초 조사 및 요구 조사
- 교육 및 연수
 - － 평생교육사의 교육·연수
 - － 평생교육 업무 행정직, 실무 담당자의 교육과 연수
 - － 평생교육 강좌 참여 강사의 교육 및 연수
- 평가 및 컨설팅
 - －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평가와 피드백
 - － 자치구 평생교육 컨설팅

2.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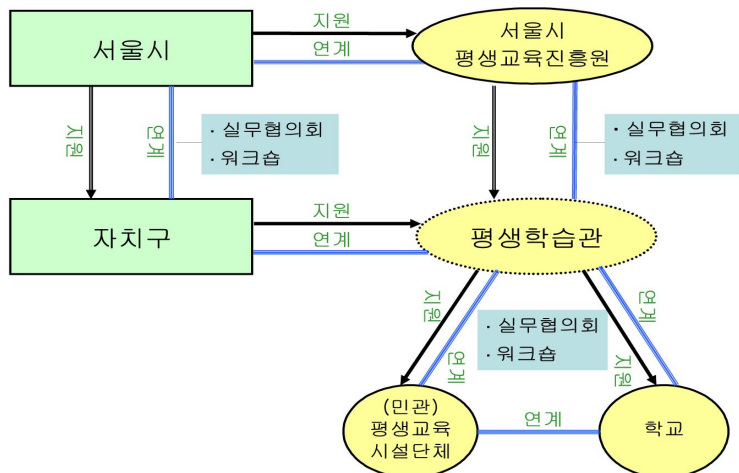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자원(인적·물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네트워킹은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인적·물적(주제와 사업, 공간 및 시설, 정보 등)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변종임, 2005).

자치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평생교육 업무를 막 시작한 자치구들은 산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연계가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며, 연계를 맺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보다 더 늦게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이 미비한 상태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자치구 내 평생교육 관련 시설 기관 간, 서울시와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에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앞으로 설립될 여러 자치구의 평생학습관과의 연계 역시 중요하다.

네트워킹은 사람, 자원(사업, 공간,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엮어 잘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므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하여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 평생교육 담당관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 구동될 수 있는 제반 행·재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과 자치구 평생학습관은 실무협의회와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연계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 단위에서의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도

또한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가동하여 평생교육 시설 및 단체, 프로그램, 강사 정보를 제공하여 시설 및 기관뿐만 아니라 시와 시민 간 소통의 통로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넘어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1.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황 및 실태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자원개발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평생교육담당관이 후발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조직 구성 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과 이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서는 만들어졌으나 인적자원개발, 특히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업무와 사업은 시의 다른 부서들, 여성가족정책관, 경쟁력

강화본부 등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장기 안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이 가능한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 부처 간에 통합은 차치하더라도 광역단위에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은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부서의 통합으로 그간 미진하였던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담당관(이후 평생교육국도 가능)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자치구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자치구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현장 밀착형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첫째, 자치구 간 격차 지원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구 간 평생교육 시설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관을 갖추지 않은 자치구에 평생학습관 건립비를 지원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당 1개의 평생학습관 설립이 어렵다면 중생활권에 1개씩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자치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격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외계층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또는 사업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 및 사업을 확대시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구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자치구에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자치구별로 평생교육 수요와 욕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자치구 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기초 조사를 수행하여 자치구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자치구가 연도별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자치구 특화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마다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보다 자치구 고유의 특성을 부각하고 자치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자치구간 차별화된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 실태 조사와 델파이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인 자치구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차원에서 추진하면 관련된 다른 자치구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할 소지를 가진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공은배·양병찬·박상대·김태준·이혜영 외 1인(2000).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곽삼근(2005). 「한국 평생교육의 사회철학적 과제」. 서울: 집문당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학습국가 건설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8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설자료」
- 국회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2004). “학습국가로의 도약,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두승(1999).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두승·최운실·양병찬(2004). 「서울지역 평생 교육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권인택(2006).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평생교육학연구」 제12권 제4호. pp.121-147
- 김득영(2006). “21세기 일본 평생학습추진 정책의 재음미”, 「교육정책포럼」 제142호. pp.17-19
- 김창환·홍지영·최상덕·김미숙(2007).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권인택·김남선·양병찬·양홍권외 1인(2005). 「지역 발전을 위한 평생학

- 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권두승·양병찬·이희수·이경아(2006).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변종임·이희수·최돈민·구교정·김동은 외 4인(2006). 「각국의 평생교육정책」.
서울: 교육과학사
- 부산발전연구원(2005). 「‘부산을 바꾸자’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부산시민 의식
조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21세기연구센터(1994). 「전문가·기업인 델파이 조사
보고서」.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송두범·양병찬·최명주(2005).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학습인프라 실태분
석」. 충남: 충남발전연구원
- 신경희(2001).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재분·이영민·홍지영·장상필(2006).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활성
화 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혜숙(2007). 「미래사회 대응 서울시 교육체제 구축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 이희수·양병찬·조순옥(2008).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 추진체제 개편연구」.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이희수(2009).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추진체제 개편”, 「평생교육법 개정
에 따른 광역 시·도와 평생학습도시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
료집」. pp. 11-30. 서울: 평생교육진흥원·교육과학기술부
- 임해규(2006). “평생학습사회로 가는 길”, 「교육정책포럼」 제142호. pp. 6-8. 서
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돈민·권두승·김민호·변종임·양병찬외 7인(2003). 「평생학습: 지식강국으로의 첫 걸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돈민·변종임·이지혜·이세정(2003). 「주요국의 평생교육체제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돈민(2004).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진단: OECD국가를 중심으로」. KEDI 포지션 페이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김현철·변종임(2005).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진흥원(2009).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광역 시·도와 평생학습도시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평생교육진흥원·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3).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2004년 제1차 KEDI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4).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2004년 제2차 KEDI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4). 「지역학습력 향상,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2004년 제3차 KEDI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5).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2005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6).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체계화 전략」. 제3차·제4차 평생교육정책포럼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하봉운(2008).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지원조례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pp.205-228
- 한승희(2005). 「포스트 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서울: 집문당
- 한승희(2006). “평생학습사회의 학습체제 연구를 위한 생태체제적 개념모형 탐

색”, 「평생교육학연구」. 제12권 제4호. pp.179-202

한승희·정민승·나승일·김민호·신범석(2006). 「미래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체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승희·권두승·김미숙·정민승·허준 외 2인(2007).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의 통합 구축방안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한승희·정연순·양홍권(2008). 「송파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 계획」. 서울: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연구센터

Gelpi, E.(1979). *A future for lifelong education*. 정우현·권두승 역(1996). 「평생교육의 미래: 원리, 정책, 그리고 실천의 방향」. 서울: 교육과학사

부 록

- <부록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부록2>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 현황
- <부록3> 텔파이 조사지
- <부록4> 설문지
- <부록5>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009.03.18 조례 제4744호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자해독교육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치구, 대학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요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3.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

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7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의 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 운영의 효율성 및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제19조(지정운영)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 및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2. 재산목록(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③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진흥원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진흥원에는 제2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진흥원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경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익금 및 이용료·수수료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료 등) ①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평생학습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5조(수익금 운영) 기부금 및 그 밖에 진흥원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비용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비용

제26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진흥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계약조건 또는 시장이 정한 지정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때

제28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

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09.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 현황(2009)

(단위 : 개소)

자치구	평생학습관	지정 평생학습관	계
강 남 구		강남도서관, 개포도서관(2)	2
강 동 구	고덕평생학습관(1)	강동도서관(1)	2
강 북 구		강북노인종합복지관*(1)	1
강 서 구		강서도서관(1)	1
관 악 구		관악문화관·도서관* ¹⁾	1
광 진 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1)	1
구 로 구		고척도서관, 구로도서관(2)	2
금 천 구		남부여성발전센터*(1)	1
노 원 구	노원평생학습관(1)		1
도 봉 구		도봉도서관(1)	1
동대문구		동대문도서관(1)	1
동 작 구		동작도서관(1)	1
마 포 구	마포평생학습관(1)		1
서대문구		서대문도서관(1)	1
서 초 구		서초종합사회복지관*(1)	1
성 동 구		성동구민대학*(1)	1
성 북 구		아리랑정보도서관*(1)	1
송 파 구		송파도서관(1)	1
양 천 구		양천도서관(1)	1
영등포구	영등포평생학습관(1)		1
용 산 구		용산도서관(1)	1
은 평 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1)	1
종 로 구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정독도서관(3)	3
중 구		남산도서관(1)	1
중 랑 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1)	1
계	4	26 (직속17, 외부9)	30 ²⁾

주 : 1) 서울시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

2) 교육청 설립 4개관, 교육청 지정 26개관(교육청 직속기관 17개관, 그 외 시립·구립 시설(*표시) 9개관

출처 : 서울시교육청 지역별 평생학습관 현황(2009. 3월)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체제 개편에 대한 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본 의견조사의 목적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으로, 자치단체 평생교육의 책임과 권한이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지사에게 이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수행해야할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 의견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처리되어 합리적, 효율적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뿐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신 의견은 귀한 연구 자료가 되오니 수고스럽더라도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03

※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이혜숙 연구위원 (☎ 2149-1265, lhsook1@s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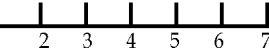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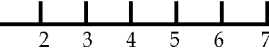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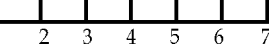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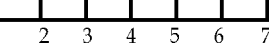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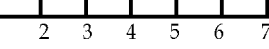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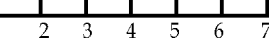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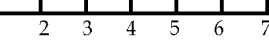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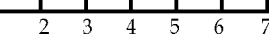
의견조사담당자: 이정화연구원 (☎ 2149-1391, yijunghwa@sdi.re.kr)

1.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새로이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향후 추진해 나가야 할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그동안 주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을 진작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차 델파이 조사

I. 다음은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로 제시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 표 해 주십시오.

문항	1차 응답결과		2차 응답	
	빈도	%	필요 없다	필요 하다
1.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 간 네트워크 구축	12명	80.0%	√ 	
2.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5명	33.3%	√ 	
3.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5명	33.3%	√ 	
4.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4명	26.7%	√ 	
5. 지역, 계층, 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4명	26.7%	√ 	
6.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4명	26.7%	√ 	
7.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3명	20.0%	√ 	
8.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2명	13.3%	√ 	

9. 위의 1~8번까지의 과제 중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우선순위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II. 다음은 서울시가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 표 해주십시오.

문항	1차 응답결과		2차 응답	
	빈도	%	필요 없다	필요 하다
10.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3명	20.0%	√ 1 2 3 4 5 6 7	
11.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3명	20.0%	√ 1 2 3 4 5 6 7	
12.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 (예: 자치구 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2명	13.3%	√ 1 2 3 4 5 6 7	
13.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3명	20.0%	√ 1 2 3 4 5 6 7	
14.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3명	20.0%	√ 1 2 3 4 5 6 7	
15.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3명	20.0%	√ 1 2 3 4 5 6 7	
16.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 (교육, 고용, 복지) 구축	2명	13.3%	√ 1 2 3 4 5 6 7	
17.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3명	20.0%	√ 1 2 3 4 5 6 7	
18.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3명	20.0%	√ 1 2 3 4 5 6 7	
19.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1명	6.7%	√ 1 2 3 4 5 6 7	

문항	1차 응답결과		2차 응답	
	빈도	%	필요 없다	필요 하다
20.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2명	13.3%	✓ 1 2 3 4 5 6 7	
21.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1명	6.7%	✓ 1 2 3 4 5 6 7	
22.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 (예: 평생학습관)	1명	6.7%	✓ 1 2 3 4 5 6 7	

23. 위의 10~22번까지의 과제 중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우선순위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이혜숙)’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갈 과제와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 및 기능, 그리고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개편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어 합리적, 효율적인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될 뿐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작성해주신 설문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4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이혜숙 부연구위원 (☎ 2149-1265, lhsook1@sdi.re.kr)
 의견조사담당자: 이정화 연구원(☎ 2149-1391, yijunghwa@sdi.re.kr)

A.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

1.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필요없다 -----> 필요하다						
	1	2	3	4	5	6	7
1)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간 네트워크 구축	☐	☐	☐	☐	☐	☐	☐
2)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	☐	☐	☐	☐	☐	☐
3)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	☐	☐	☐	☐	☐	☐
4)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	☐	☐	☐	☐	☐	☐
5) 지역, 계층, 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	☐	☐	☐	☐	☐	☐
6)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	☐	☐	☐	☐	☐	☐
7)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	☐	☐	☐	☐	☐	☐
8)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	☐	☐	☐	☐	☐	☐

2. 서울시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평생교육 관련 기관(평생교육기관, 자치구, 학교 등)간 네트워크 구축	☐	☐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 강화	☐	☐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	☐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	☐
지역, 계층, 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	☐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	☐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	☐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 도출	☐	☐

B. 서울시가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

1.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필요없다 -----> 필요하다						
	1	2	3	4	5	6	7
1)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	☐	☐	☐	☐	☐	☐
2)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	☐	☐	☐	☐	☐	☐
3)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 (예: 자치구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	☐	☐	☐	☐	☐	☐
4)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	☐	☐	☐	☐	☐	☐
5) 자치구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	☐	☐	☐	☐	☐	☐
6) 자치구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	☐	☐	☐	☐	☐	☐
7)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	☐	☐	☐	☐	☐	☐	☐
8)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	☐	☐	☐	☐	☐	☐
9)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	☐	☐	☐	☐	☐	☐
10)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	☐	☐	☐	☐	☐	☐
11)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	☐	☐	☐	☐	☐	☐
12)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	☐	☐	☐	☐	☐
13)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 (예: 평생학습관)	☐	☐	☐	☐	☐	☐	☐

2. 서울시가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해야 할 역할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각 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1 순위	2 순위	3 순위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	☐	☐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	☐	☐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 (예: 자치구간 갈등사안, DB 구축 등)	☐	☐	☐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실시	☐	☐	☐
자치구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	☐	☐
자치구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	☐	☐
서울시와 자치구간 통합 행정서비스 체제(교육, 고용, 복지) 구축	☐	☐	☐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	☐	☐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	☐	☐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	☐	☐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	☐	☐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	☐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 지원 (예: 평생학습관)	☐	☐	☐

C. 질문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각 문항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성별	☐ 남성 ☐ 여성
2. 나이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3. 근무지	☐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종랑구 ☐ 서울시청
4. 평생교육사 여부	☐ 예 ☐ 아니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설문조사 분석 결과표

〈부록표 5-1〉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킹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 체		77	6.12	1.460	
성별	남자	32	6.19	1.355	.364
	여자	45	6.07	1.543	
나이	20~29세	13	5.62	2.181	.725
	30~39세	26	6.23	1.275	
	40~49세	22	6.09	1.509	
	50세 이상	16	6.38	.885	
근무처	도심권	5	6.60	.548	1.767
	동북권	21	5.38	2.109	
	서북권	10	6.50	.707	
	서남권	23	6.30	1.363	
	동남권	12	6.17	.835	
	서울시청	6	6.83	.408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67	2.000	-1.179
	아니오	59	6.25	1.240	

***p<.001, **p<.01, *p<.05

〈부록표 5-2〉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지원강화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 체		77	5.78	1.304	
성별	남자	32	5.78	1.338	.011
	여자	45	5.78	1.295	
나이	20~29세	13	5.85	1.625	.980
	30~39세	26	5.73	1.116	
	40~49세	22	5.73	1.453	
	50세 이상	16	5.88	1.204	
근무처	도심권	5	6.60	.548	.695
	동북권	21	5.76	1.814	
	서북권	10	5.30	.823	
	서남권	23	5.87	1.058	
	동남권	12	5.67	1.155	
	서울시청	6	5.83	1.472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61	1.335	-.614
	아니오	59	5.83	1.302	

***p<.001, **p<.01, *p<.05

〈부록표 5-3〉 평생교육 관련 전담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 체		77	6.06	1.436	
성별	남자	32	5.91	1.445	-.815
	여자	45	6.18	1.435	
나이	20~29세	13	5.85	2.230	.671
	30~39세	26	6.04	1.113	
	40~49세	22	5.91	1.601	
	50세 이상	16	6.50	.730	
근무처	도심권	5	6.40	.894	.363
	동북권	21	6.10	1.814	
	서북권	10	5.90	1.287	
	서남권	23	5.87	1.632	
	동남권	12	6.08	.900	
	서울시청	6	6.67	.516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6.06	1.514	-.030
	아니오	59	6.07	1.425	

***p<.001, **p<.01, *p<.05

〈부록표 5-4〉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통합 및 연계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 체		77	5.78	1.373	
성별	남자	32	5.53	1.391	-1.336
	여자	45	5.96	1.348	
나이	20~29세	5.77	2.006	2.181	2.584
	30~39세	5.85	1.008	1.275	
	40~49세	5.23	1.510	1.509	
	50세 이상	6.44	.727	.885	
근무처	도심권	5	6.40	.894	.488
	동북권	21	5.90	1.758	
	서북권	10	5.50	.972	
	서남권	23	5.61	1.438	
	동남권	12	5.67	1.155	
	서울시청	6	6.17	.983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44	1.617	-1.049
	아니오	59	5.88	1.288	

***p<.001, **p<.01, *p<.05

〈부록표 5-5〉 지역, 계층, 주제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 체		77	5.92	1.449	
성별	남자	32	5.78	1.497	-.711
	여자	45	6.02	1.422	
나이	20~29세	13	5.69	2.057	2.260
	30~39세	26	6.00	1.265	
	40~49세	22	5.45	1.535	
	50세 이상	16	6.63	.619	
근무처	도심권	5	6.80	.447	1.229
	동북권	21	5.67	1.770	
	서북권	10	5.50	.707	
	서남권	23	6.13	1.325	
	동남권	12	5.58	1.881	
	서울시청	6	6.67	.516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61	1.754	-.904
	아니오	59	6.02	1.345	

***p<.001, **p<.01, *p<.05

〈부록표 5-6〉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홍보와 인식의 확산

구 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 체		77	5.92	1.458	
성별	남자	32	5.78	1.518	-.705
	여자	45	6.02	1.422	
나이	20~29세	13	5.92	2.216	1.906
	30~39세	26	6.08	1.230	
	40~49세	22	5.36	1.432	
	50세 이상	16	6.44	.814	
근무처	도심권	5	6.60	.548	1.556
	동북권	21	5.38	1.962	
	서북권	10	5.70	1.160	
	서남권	23	5.91	1.443	
	동남권	12	6.33	.888	
	서울시청	6	6.83	.408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6.06	1.662	.403
	아니오	59	5.88	1.403	

***p<.001, **p<.01, *p<.05

〈부록표 5-7〉 서울시 차원의 평생교육 관련 연구 수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52	1.561	
성별	남자	32	5.56	1.564	.203
	여자	45	5.49	1.576	
나이	20~29세	13	5.31	2.136	3.949*
	30~39세	26	5.35	1.355	
	40~49세	22	5.05	1.558	
	50세 이상	16	6.63	.719	
근무처	도심권	5	5.80	1.095	.247
	동북권	21	5.29	1.821	
	서북권	10	5.60	1.350	
	서남권	23	5.57	1.590	
	동남권	12	5.42	1.782	
	서울시청	6	6.00	.894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50	1.823	-.054
	아니오	59	5.53	1.490	

***p<.001, **p<.01, *p<.05

〈부록표 5-8〉 서울시 평생교육 비전 설정과 과제도출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55	1.518	
성별	남자	32	5.50	1.545	-.220
	여자	45	5.58	1.515	
나이	20~29세	13	5.46	2.184	2.647
	30~39세	26	5.38	1.235	
	40~49세	22	5.14	1.612	
	50세 이상	16	6.44	.727	
근무처	도심권	5	5.40	.894	.831
	동북권	21	5.24	1.758	
	서북권	10	5.50	1.354	
	서남권	23	5.57	1.562	
	동남권	12	5.58	1.621	
	서울시청	6	6.67	.516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72	1.565	.552
	아니오	59	5.49	1.513	

***p<.001, **p<.01, *p<.05

〈부록표 5-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서울시 추진 과제(1순위)

구분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 참여지원	추진 체계 구축	인적자원 개발과 통합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화	홍보와 인식 확산	관련 연구 수행	비전설정 및 과제도출	전체	χ^2
전체		22	9	14	3	8	8	3	10	77	
		28.6	11.7	18.2	3.9	10.4	10.4	3.9	13.0	100.0	
성별	남자	12	3	5	1	4	2	1	4	32	3,290
		37.5	9.4	15.6	3.1	12.5	6.3	3.1	12.5	100.0	
	여자	10	6	9	2	4	6	2	6	45	
		22.2	13.3	20.0	4.4	8.9	13.3	4.4	13.3	100.0	
나이	20~29세	2	0	4	0	1	3	0	3	13	23,272
		15.4	0.0	30.8	0.0	7.7	23.1	0.0	23.1	100.0	
	30~39세	10	3	3	2	3	2	1	2	26	
		38.5	11.5	11.5	7.7	11.5	7.7	3.8	7.7	100.0	
	40~49세	5	5	5	1	1	3	0	2	22	
		22.7	22.7	22.7	4.5	4.5	13.6	0.0	9.1	100.0	
	50세 이상	5	1	2	0	3	0	2	3	16	
		31.25	6.25	12.5	0	18.75	0	12.5	18.75	100	
근무처	도심권	2	1	0	0	1	1	0	0	5	62,616**
		40.0	20.0	0.0	0.0	20.0	20.0	0.0	0.0	100.0	
	동북권	3	3	8	1	2	3	0	1	21	
		14.3	14.3	38.1	4.8	9.5	14.3	0.0	4.8	100.0	
	서북권	4	0	1	0	0	0	3	2	10	
		40.0	0.0	10.0	0.0	0.0	0.0	30.0	20.0	100.0	
	서남권	10	4	3	0	3	1	0	2	23	
		43.5	17.4	13.0	0.0	13.0	4.3	0.0	8.7	100.0	
	동남권	2	1	2	2	0	3	0	2	12	
		16.7	8.3	16.7	16.7	0.0	25.0	0.0	16.7	100.0	
	서울시청	1	0	0	0	2	0	0	3	6	
		16.7	0.0	0.0	0.0	33.3	0.0	0.0	50.0	100.0	
평생 교육사 여부	예	4	2	4	0	2	2	0	4	18	3,946
		22.2	11.1	22.2	0.0	11.1	11.1	0.0	22.2	100.0	
	아니오	18	7	10	3	6	6	3	6	59	
		30.5	11.9	16.9	5.1	10.2	10.2	5.1	10.2	100.0	

***p<.001, **p<.01, *p<.05

〈부록표 5-10〉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서울시 추진 과제(2순위)

구분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소외계층 참여지원	추진 체계 구축	인적자원 개발과 통합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화	홍보와 인식 확산	관련 연구 수행	비전설정 및 과제도출	전체	χ^2
전체		11	3	17	9	16	12	4	5	77	
		14.3	3.9	22.1	11.7	20.8	15.6	5.2	6.5	100.0	
성별	남자	3	1	7	3	7	6	2	3	32	2,461
		9.4	3.1	21.9	9.4	21.9	18.8	6.3	9.4	100.0	
	여자	8	2	10	6	9	6	2	2	45	
		17.8	4.4	22.2	13.3	20.0	13.3	4.4	4.4	100.0	
나이	20~29세	1	0	6	1	2	3	0	0	13	22,769
		7.7	0.0	46.2	7.7	15.4	23.1	0.0	0.0	100.0	
	30~39세	4	2	5	3	6	3	1	2	26	
		15.4	7.7	19.2	11.5	23.1	11.5	3.8	7.7	100.0	
	40~49세	4	1	3	2	7	1	3	1	22	
		18.2	4.5	13.6	9.1	31.8	4.5	13.6	4.5	100.0	
	50세 이상	2	0	3	3	1	5	0	2	16	
		12.5	0.0	18.8	18.8	6.3	31.3	0.0	12.5	100.0	
근무처	도심권	0	0	2	0	3	0	0	0	5	49,838
		0.0	0.0	40.0	0.0	60.0	0.0	0.0	0.0	100.0	
	동북권	1	2	3	4	6	2	3	0	21	
		4.8	9.5	14.3	19.0	28.6	9.5	14.3	0.0	100.0	
	서북권	2	0	2	0	1	2	0	3	10	
		20.0	0.0	20.0	0.0	10.0	20.0	0.0	30.0	100.0	
	서남권	1	0	6	5	4	5	0	2	23	
		4.3	0.0	26.1	21.7	17.4	21.7	0.0	8.7	100.0	
	동남권	5	1	2	0	1	2	1	0	12	
		41.7	8.3	16.7	0.0	8.3	16.7	8.3	0.0	100.0	
	서울시청	2	0	2	0	1	1	0	0	6	
		33.3	0.0	33.3	0.0	16.7	16.7	0.0	0.0	100.0	
평생 교육사 여부	예	5	0	6	3	0	3	1	0	18	12,185
		27.8	0.0	33.3	16.7	0.0	16.7	5.6	0.0	100.0	
	아니오	6	3	11	6	16	9	3	5	59	
		10.2	5.1	18.6	10.2	27.1	15.3	5.1	8.5	100.0	

***p<.001, **p<.01, *p<.05

〈부록표 5-11〉 서울시 평생교육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86	1.374	
성별	남자	32	5.75	1.586	-.549
	여자	45	5.93	1.214	
나이	20~29세	13	5.23	1.481	3.125*
	30~39세	26	6.15	1.084	
	40~49세	22	5.45	1.738	
	50세 이상	16	6.44	.727	
근무처	도심권	5	6.40	.894	.953
	동북권	21	6.00	1.414	
	서북권	10	5.80	1.033	
	서남권	23	5.87	1.359	
	동남권	12	5.17	1.850	
	서울시청	6	6.33	.816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72	1.602	-.425
	아니오	59	5.90	1.309	

***p<.001, **p<.01, *p<.05

〈부록표 5-12〉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구에 보급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30	1.663	
성별	남자	32	5.34	1.771	0.196
	여자	45	5.27	1.601	
나이	20~29세	13	5.69	1.032	2.671
	30~39세	26	5.04	1.587	
	40~49세	22	4.77	2.224	
	50세 이상	16	6.13	.806	
근무처	도심권	5	6.40	.894	1.502
	동북권	21	5.29	2.053	
	서북권	10	5.10	1.197	
	서남권	23	5.61	1.270	
	동남권	12	4.33	2.146	
	서울시청	6	5.50	.837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4.56	1.723	-2.128*
	아니오	59	5.53	1.590	

***p<.001, **p<.01, *p<.05

〈부록표 5-13〉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6.26	1.129	
성별	남자	32	6.16	1.322	-.643
	여자	45	6.33	.977	
나이	20~29세	13	6.08	1.256	.506
	30~39세	26	6.38	1.061	
	40~49세	22	6.09	1.377	
	50세 이상	16	6.44	.727	
근무처	도심권	5	6.60	.894	.525
	동북권	21	6.29	1.488	
	서북권	10	5.80	.919	
	서남권	23	6.26	1.096	
	동남권	12	6.50	.798	
	서울시청	6	6.17	.983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6.22	1.114	-.162
	아니오	59	6.27	1.142	

***p<.001, **p<.01, *p<.05

〈부록표 5-14〉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치구 대상 공모사업 실시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14	1.604	
성별	남자	32	4.94	1.777	-.917
	여자	45	5.29	1.471	
나이	20~29세	13	5.92	.862	3.309*
	30~39세	26	4.88	1.681	
	40~49세	22	4.55	1.654	
	50세 이상	16	5.75	1.528	
근무처	도심권	5	5.40	1.517	.442
	동북권	21	4.81	1.940	
	서북권	10	5.10	1.729	
	서남권	23	5.26	1.685	
	동남권	12	5.08	1.165	
	서울시청	6	5.83	.408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4.83	1.978	-.801
	아니오	59	5.24	1.478	

***p<.001, **p<.01, *p<.05

〈부록표 5-15〉 자치구 간 평생교육에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77	1.413	
성별	남자	32	5.66	1.638	-,547
	여자	45	5.84	1.242	
나이	20~29세	13	6.15	1.405	1,089
	30~39세	26	5.58	1.238	
	40~49세	22	5.50	1.655	
	50세 이상	16	6.13	1.310	
근무처	도심권	5	6.80	.447	,734
	동북권	21	5.76	1.700	
	서북권	10	6.00	1.155	
	서남권	23	5.65	1.434	
	동남권	12	5.50	1.087	
	서울시청	6	5.50	1.761	
평생교육사 여부	예	18	5.39	1.614	-1,177
	아니오	59	5.88	1.340	

***p<.001, **p<.01, *p<.05

〈부록표 5-16〉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27	1.706	
성별	남자	32	5.00	1.867	-1,152
	여자	45	5.47	1.575	
나이	20~29세	13	5.77	1.423	,816
	30~39세	26	5.08	1.647	
	40~49세	22	5.00	1.902	
	50세 이상	16	5.56	1.750	
근무처	도심권	5	6.40	,894	1,051
	동북권	21	4.86	1.982	
	서북권	10	5.20	1.229	
	서남권	23	5.57	1.754	
	동남권	12	4.83	1.749	
	서울시청	6	5.67	1.366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5.17	1.823	-,287
	아니오	18	5.31	1.684	

***p<.001, **p<.01, *p<.05

〈부록표 5-17〉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합 행정서비스체제 구축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65	1.285	
성별	남자	32	5.53	1.414	-.658
	여자	45	5.73	1.195	
나이	20~29세	13	5.31	1.377	1.781
	30~39세	26	5.65	1.263	
	40~49세	22	5.41	1.501	
	50세 이상	16	6.25	.683	
근무처	도심권	5	5.80	1.095	.389
	동북권	21	5.43	1.690	
	서북권	10	6.00	.816	
	서남권	23	5.52	1.238	
	동남권	12	5.83	1.115	
	서울시청	6	5.83	1.169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5.56	1.542	-.309
	아니오	18	5.68	1.210	

***p<.001, **p<.01, *p<.05

〈부록표 5-18〉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	5.42	1.499	
성별	남자	32	5.19	1.731	-1.076
	여자	45	5.58	1.305	
나이	20~29세	13	5.62	1.261	.404
	30~39세	26	5.31	1.408	
	40~49세	22	5.23	1.716	
	50세 이상	16	5.69	1.580	
근무처	도심권	5	5.20	1.304	1.624
	동북권	21	5.71	1.586	
	서북권	10	4.70	1.636	
	서남권	23	5.09	1.564	
	동남권	12	5.67	1.231	
	서울시청	6	6.50	.548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5.50	1.295	.300
	아니오	18	5.39	1.565	

***p<.001, **p<.01, *p<.05

〈부록표 5-19〉 평생교육 실무자 협력망 구축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77	1.317	
성별	남자	32	5.72	1.326	-.265
	여자	45	5.80	1.325	
나이	20~29세	13	5.46	1.613	.596
	30~39세	26	5.85	1.156	
	40~49세	22	5.64	1.590	
	50세 이상	16	6.06	.854	
근무처	도심권	5	6.00	1.225	1.043
	동북권	21	5.90	1.513	
	서북권	10	5.40	1.430	
	서남권	23	5.39	1.373	
	동남권	12	6.25	.965	
	서울시청	6	6.17	.408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5.56	1.653	-.655
	아니오	18	5.83	1.206	

***p<.001, **p<.01, *p<.05

〈부록표 5-20〉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 제공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22	1.527	
성별	남자	32	5.13	1.641	-.452
	여자	45	5.29	1.456	
나이	20~29세	13	5.69	1.182	4.736**
	30~39세	26	4.92	1.495	
	40~49세	22	4.59	1.790	
	50세 이상	16	6.19	.750	
근무처	도심권	5	5.40	1.342	.918
	동북권	21	4.90	1.729	
	서북권	10	4.90	1.853	
	서남권	23	5.48	1.442	
	동남권	12	5.00	1.414	
	서울시청	6	6.17	.408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4.78	1.734	-1.285
	아니오	18	5.36	1.448	

***p<.001, **p<.01, *p<.05

〈부록표 5-21〉 자치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4.01	1.788	
성별	남자	32	3.69	1.786	-1.353
	여자	45	4.24	1.773	
나이	20~29세	13	4.92	1.256	2.724
	30~39세	26	3.58	1.629	
	40~49세	22	3.59	1.968	
	50세 이상	16	4.56	1.861	
근무처	도심권	5	3.40	1.342	1.691
	동북권	21	3.90	2.278	
	서북권	10	3.30	1.703	
	서남권	23	4.26	1.602	
	동남권	12	3.75	1.422	
	서울시청	6	5.67	.516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4.00	1.879	-.034
	아니오	18	4.02	1.776	

***p<.001, **p<.01, *p<.05

〈부록표 5-22〉 자치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01	1.674	
성별	남자	32	4.81	2.007	-.834
	여자	45	5.16	1.397	
나이	20~29세	13	5.15	1.573	1.342
	30~39세	26	4.96	1.280	
	40~49세	22	4.55	2.087	
	50세 이상	16	5.63	1.628	
근무처	도심권	5	5.60	1.342	.992
	동북권	21	4.86	1.878	
	서북권	10	4.60	1.350	
	서남권	23	5.22	1.858	
	동남권	12	4.50	1.567	
	서울시청	6	6.00	.632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4.89	1.605	-.369
	아니오	18	5.05	1.706	

***p<.001, **p<.01, *p<.05

〈부록표 5-23〉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지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77	5.74	1.568	
성별	남자	32	5.72	1.611	-.100
	여자	45	5.76	1.554	
나이	20~29세	13	6.31	1.316	2.683
	30~39세	26	5.54	1.630	
	40~49세	22	5.18	1.763	
	50세 이상	16	6.38	1.025	
근무처	도심권	5	6.00	1.414	.700
	동북권	21	5.57	1.912	
	서북권	10	5.20	1.751	
	서남권	23	6.04	1.107	
	동남권	12	5.50	1.931	
	서울시청	6	6.33	.516	
평생교육사 여부	예	59	6.00	1.495	.829
	아니오	18	5.66	1.593	

***p<.001, **p<.01, *p<.05

〈부록표 5-24〉 자치구와의 관계에서의 서울시의 역할(1순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χ^2
전체		18	4	19	3	2	3	5	5	3	1	0	1	13	77	
		23.4	5.2	24.7	3.9	2.6	3.9	6.5	6.5	3.9	1.3	0.0	1.3	16.9	100.0	
성 별	남자	9	1	7	1	0	2	2	2	1	0	0	0	7	32	5,762
		28.1	3.1	21.9	3.1	0.0	6.3	6.3	6.3	3.1	0.0	0.0	0.0	21.9	100.0	
	여자	9	3	12	2	2	1	3	3	2	1	0	1	6	45	
		20.0	6.7	26.7	4.4	4.4	2.2	6.7	6.7	4.4	2.2	0.0	2.2	13.3	100.0	
나 이	20~	2	1	4	1	1	0	1	0	0	0	0	0	3	13	30,628
	29세	15.4	7.7	30.8	7.7	7.7	0.0	7.7	0.0	0.0	0.0	0.0	0.0	23.1	100.0	
	30~	5	1	5	2	1	2	3	1	3	0	0	0	3	26	
	39세	19.2	3.8	19.2	7.7	3.8	7.7	11.5	3.8	11.5	0.0	0.0	0.0	11.5	100.0	
	40~	5	0	7	0	0	1	0	3	0	1	0	1	4	22	
	49세	22.7	0.0	31.8	0.0	0.0	4.5	0.0	13.6	0.0	4.5	0.0	4.5	18.2	100.0	
	50세	6	2	3	0	0	0	1	1	0	0	0	0	3	16	
	이상	37.5	12.5	18.8	0.0	0.0	0.0	6.3	6.3	0.0	0.0	0.0	0.0	18.8	100.0	
	도심권	1	1	2	0	1	0	0	0	0	0	0	0	0	5	
		20.0	20.0	40.0	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그 무 처	동북권	5	0	8	0	0	1	1	1	0	0	0	0	5	21	51,410
		23.8	0.0	38.1	0.0	0.0	4.8	4.8	4.8	0.0	0.0	0.0	0.0	23.8	100.0	
	서북권	2	1	3	0	1	0	1	0	0	0	0	0	2	10	
		20.0	10.0	30.0	0.0	10.0	0.0	10.0	0.0	0.0	0.0	0.0	0.0	20.0	100.0	
	서남권	5	1	3	2	0	1	2	1	1	1	0	1	5	23	
		21.7	4.3	13.0	8.7	0.0	4.3	8.7	4.3	4.3	4.3	0.0	4.3	21.7	100.0	
	동남권	3	1	1	1	0	0	0	3	2	0	0	0	1	12	
		25.0	8.3	8.3	8.3	0.0	0.0	0.0	25.0	16.7	0.0	0.0	0.0	8.3	100.0	
	서울 사청	2	0	2	0	0	1	1	0	0	0	0	0	0	6	
		33.3	0.0	33.3	0.0	0.0	16.7	16.7	0.0	0.0	0.0	0.0	0.0	0.0	100.0	
평생 교육 여부	예	3	0	4	2	0	1	2	0	2	0	0	1	3	18	
		16.7	0.0	22.2	11.1	0.0	5.6	11.1	0.0	11.1	0.0	0.0	5.6	16.7	100.0	
	아니오	15	4	15	1	2	2	3	5	1	1	0	0	10	59	
		25.4	6.8	25.4	1.7	3.4	3.4	5.1	8.5	1.7	1.7	0.0	0.0	16.9	100.0	

***p<.001, **p<.01, *p<.05

- ① 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② 사업 발굴하여 자치구 보급,
 ③ 자치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 ④ 자치구 추진 사업지원 및 공모사업,
 ⑤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지원, ⑥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⑦ 통합행정 서비스 체제구축, ⑧ 업무 담당자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⑨ 실무자 협력망 구축, ⑩ 자치구에 평생교육 컨설팅,
 ⑪ 자치구 평생교육 평가, ⑫ 자치구와 공동사업 발굴하여 지원,
 ⑬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지원

〈부록표 5-25〉 자치구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의 역할(2순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χ^2
전체		10	8	12	3	9	3	5	7	4	4	0	5	7	77	
		13.0	10.4	15.6	3.9	11.7	3.9	6.5	9.1	5.2	5.2	0.0	6.5	9.1	100.0	
성 별	남자	6	5	4	3	5	0	2	2	0	2	0	2	1	32	15.859
		18.8	15.6	12.5	9.4	15.6	0.0	6.3	6.3	0.0	6.3	0.0	6.3	3.1	100.0	
	여자	4	3	8	0	4	3	3	5	4	2	0	3	6	45	
		8.9	6.7	17.8	0.0	8.9	6.7	6.7	11.1	8.9	4.4	0.0	6.7	13.3	100.0	
나 이	20~	1	0	2	0	0	2	0	1	1	0	0	3	3	13	63.848**
	29세	7.7	0.0	15.4	0.0	0.0	15.4	0.0	7.7	7.7	0.0	0.0	23.1	23.1	100.0	
	30~	3	2	6	0	3	1	3	3	1	0	0	1	3	26	
	39세	11.5	7.7	23.1	0.0	11.5	3.8	11.5	11.5	3.8	0.0	0.0	3.8	11.5	100.0	
	40~	6	4	2	0	5	0	1	1	2	0	0	1	0	22	
	49세	27.3	18.2	9.1	0.0	22.7	0.0	4.5	4.5	9.1	0.0	0.0	4.5	0.0	100.0	
	50세	0	2	2	3	1	0	1	2	0	4	0	0	1	16	
	이상	0.0	12.5	12.5	18.8	6.3	0.0	6.3	12.5	0.0	25.0	0.0	0.0	6.3	100.0	
근 무 처	도심권	0	1	0	1	0	1	1	1	0	0	0	0	0	5	66.557
		0.0	20.0	0.0	20.0	0.0	20.0	20.0	20.0	0.0	0.0	0.0	0.0	0.0	100.0	
	동북권	5	2	2	0	5	1	1	1	1	2	0	0	1	21	
		23.8	9.5	9.5	0.0	23.8	4.8	4.8	4.8	4.8	9.5	0.0	0.0	4.8	100.0	
	서북권	1	0	3	0	1	0	2	2	0	0	0	1	0	10	
		10.0	0.0	30.0	0.0	10.0	0.0	20.0	20.0	0.0	0.0	0.0	10.0	0.0	100.0	
	서남권	2	4	4	0	2	0	1	2	1	1	0	4	2	23	
		8.7	17.4	17.4	0.0	8.7	0.0	4.3	8.7	4.3	4.3	0.0	17.4	8.7	100.0	
	동남권	1	0	2	0	1	1	0	1	2	1	0	0	3	12	
		8.3	0.0	16.7	0.0	8.3	8.3	0.0	8.3	16.7	8.3	0.0	0.0	25.0	100.0	
서울시청		1	1	1	2	0	0	0	0	0	0	0	0	1	6	
		16.7	16.7	16.7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6.7	100.0	
평생 교육사 여부	예	1	0	4	1	0	0	2	0	2	1	0	3	4	18	20.626*
		5.6	0.0	22.2	5.6	0.0	0.0	11.1	0.0	11.1	5.6	0.0	16.7	22.2	100.0	
	아니오	9	8	8	2	9	3	3	7	2	3	0	2	3	59	
		15.3	13.6	13.6	3.4	15.3	5.1	5.1	11.9	3.4	5.1	0.0	3.4	5.1	100.0	

***p<.001, **p<.01, *p<.05

- ① 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② 사업 발굴하여 자치구 보급,
- ③ 자치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 ④ 자치구 추진 사업지원 및 공모사업,
- ⑤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지원, ⑥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 ⑦ 통합행정 서비스 체제구축, ⑧ 업무 담당자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 ⑨ 실무자 협력망 구축, ⑩ 자치구에 평생교육 컨설팅,
- ⑪ 자치구 평생교육 평가, ⑫ 자치구와 공동사업 발굴하여 지원,
- ⑬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지원

〈부록표 5-26〉 자치구와의 관계에서의 서울시의 역할(3순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χ ²		
전체		9	3	7	3	8	7	9	8	5	5	0	5	8	77			
		11.7	3.9	9.1	3.9	10.4	9.1	11.7	10.4	6.5	6.5	0.0	6.5	10.4	100.0			
성 별	남자	3	2	1	0	3	2	6	3	4	2	0	3	3	32	12,039		
		9.4	6.3	3.1	0.0	9.4	6.3	18.8	9.4	12.5	6.3	0.0	9.4	9.4	100.0			
	여자	6	1	6	3	5	5	3	5	1	3	0	2	5	45			
		13.3	2.2	13.3	6.7	11.1	11.1	6.7	11.1	2.2	6.7	0.0	4.4	11.1	100.0			
나 이	20~	1	0	2	0	1	3	0	2	0	1	0	1	2	13	36,488		
	29세	7.7	0.0	15.4	0.0	7.7	23.1	0.0	15.4	0.0	7.7	0.0	7.7	15.4	100.0			
	30~	4	0	1	1	6	1	2	2	2	2	0	2	3	26			
	39세	15.4	0.0	3.8	3.8	23.1	3.8	7.7	7.7	7.7	7.7	0.0	7.7	11.5	100.0			
	40~	3	3	2	2	1	2	5	1	2	0	0	0	1	22			
	49세	13.6	13.6	9.1	9.1	4.5	9.1	22.7	4.5	9.1	0.0	0.0	0.0	4.5	100.0			
	50세	1	0	2	0	0	1	2	3	1	2	0	2	2	16			
	이상	6.3	0.0	12.5	0.0	0.0	6.3	12.5	18.8	6.3	12.5	0.0	12.5	12.5	100.0			
	지 무 체	도심권	2	0	1	0	0	0	0	0	0	1	0	0	1		5	64,013
		동북권	40.0	0.0	20.0	0.0	0.0	0.0	0.0	0.0	0.0	20.0	0.0	0.0	20.0		100.0	
3			0	4	1	1	1	5	0	2	0	0	1	3	21			
서북권		14.3	0.0	19.0	4.8	4.8	4.8	23.8	0.0	9.5	0.0	0.0	4.8	14.3	100.0			
		1	0	0	1	3	1	1	0	1	1	0	1	0	10			
서남권		10.0	0.0	0.0	10.0	30.0	10.0	10.0	0.0	10.0	10.0	0.0	10.0	0.0	100.0			
		2	3	1	0	2	3	1	2	1	2	0	3	3	23			
동남권		8.7	13.0	4.3	0.0	8.7	13.0	4.3	8.7	4.3	8.7	0.0	13.0	13.0	100.0			
		0	0	1	1	2	0	2	3	1	1	0	0	1	12			
서울시 청		0.0	0.0	8.3	8.3	16.7	0.0	16.7	25.0	8.3	8.3	0.0	0.0	8.3	100.0			
		1	0	0	0	0	2	0	3	0	0	0	0	0	6			
평생 교육 여부		예	16.7	0.0	0.0	0.0	0.0	33.3	0.0	50.0	0.0	0.0	0.0	0.0	0.0	100.0	12,443	
			4	0	1	0	2	2	2	4	0	1	0	2	0	18		
		아니오	22.2	0.0	5.6	0.0	11.1	11.1	11.1	22.2	0.0	5.6	0.0	11.1	0.0	100.0		
	5		3	6	3	6	5	7	4	5	4	0	3	8	59			
		8.5	5.1	10.2	5.1	10.2	8.5	11.9	6.8	8.5	6.8	0.0	5.1	13.6	100.0			

***p<.001, **p<.01, *p<.05

- ① 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② 사업 발굴하여 자치구 보급,
- ③ 자치구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 ④ 자치구 추진 사업지원 및 공모사업,
- ⑤ 자치구 간 격차완화를 위한 지원, ⑥ 자치구 간 차별화 촉진 및 특성화 유도,
- ⑦ 통합행정 서비스 체제구축, ⑧ 업무 담당자 역량개발 및 연수 실시,
- ⑨ 실무자 협력망 구축, ⑩ 자치구에 평생교육 컨설팅,
- ⑪ 자치구 평생교육 평가, ⑫ 자치구와 공동사업 발굴하여 지원,
- ⑬ 자치구 평생교육 거점시설 설립지원

영문 요약 (Abstract)



Improvement Device of Lifelong Educatio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yesook Lee · Eun-cheol Park · Junghwa Yi

Increasing the importance in lifelong education with the change towards the knowledge-based society, local governments' interest in lifelong education has increased. Moreover, as a result of amendment in Lifelong Education Law in December 2007,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below SMG) was given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improve this. Therefore, this research is aimed for the proposal of the operation improvement plan for the sake of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operational circumstance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SMG and the local governments(Jachigu), to provide an operational improvement plan. Also, experts are taking into account of these points, which will be reflected into the improvement plans.

In this research, the interview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current lifelong education's operational circumstances. The interviewee was the people in charge of lifelong in 13 local governments. We also used the Delphi technique to experts, and the survey method to ask the people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about the improvement demands.

On the basis of those results, we suggest the operational improvement plan to SMG.

First of all, they should empower the functional operations of the lifelong education division. The current director of lifelong education should have a duty to manage the whole work of other departments' related work in lifelong education.

Secondly,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SMG should build the Lifelong Educational Agency(SMG Peongsanggyoyook Ginheungwon) as a main system to pursue the lifelong education.

Thirdly, they should construct the lifelong educational network. This network connects the lifelong education division and other related departments in SMG including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is case, Lifelong Educational Agency in SMG, as a main center, will build the network. Also, SMG should arrange information system to enhance communications between SMG and people.

Besides these poin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MG should promote the integra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Also SMG should reduce the dispar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in SMG.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Contents and Scope
3. Method

Chapter 2 Amendment in Lifelong Education Law and Dut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Amendment in Lifelong Education Law
2. Duty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apter 3 Current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Current Condition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 Current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3. Policy Suggestions

Chapter 4 Improvement Strategy

1. Construction of Operation System
2. Construc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al Network.
3. Policy Suggestions

References

Appendices

시정연 2009-PR-12

서울시 평생교육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09년 6월 1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5,000원 ISBN 978-89-8052-660-4 9354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